

2013-16 책임연구보고서

# 부정불량식품 범죄에 대한 정책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 부정불량식품 범죄에 대한 정책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수사구조개혁연구실

연구관 김 현 숙

# 목 차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문제의 제기 .....	1
제2절 불량식품의 개념과 형사처벌대상으로서의 식품범죄 .....	3
1. 불량식품의 개념 .....	3
가. 현행 식품관련법상의 불량식품 개념 .....	3
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불량식품 개념 .....	16
다.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에서 제시한 불량식품 개념 .....	17
라. 외국의 불량식품 개념 .....	18
2. 식품관련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	21
가.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	21
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형사처벌 대상 .....	22
다. 기타 식품관계 법률에서의 형사처벌 대상 .....	23
<b>제2장 부정·불량식품범죄의 실태 및 문제점</b> .....	<b>25</b>
제1절 식품산업과 식품범죄 .....	25
1. 식품범죄에 대한 인식과 한계 .....	25
2. 범죄의 수사단서상 특징 .....	26
3. 부정·불량식품의 발생구조 분석 .....	27
가. 생산자 또는 공급자 측면 .....	28
나. 수요자 측면 .....	29
다. 제도적 측면 .....	30
라. 정책환경적 측면 .....	30

제2절 불량식품사범의 처리실태 .....	31
1. 식품위해사범의 발생건수 .....	31
2.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유형별 위반 및 행정제재 .....	32
3. 식품위해사범 처리현황 .....	34
가. 적발 및 단속현황 .....	34
나. 법원 접수·처리 현황 .....	35
4.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의 특징 .....	37
가. 30~50대 여성범죄자가 다수 .....	37
나. 동종재범율 및 재범기간 .....	38
제3절 불량식품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	40
1. 허위표시범죄에 대한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40
가. 감경요소 .....	41
나. 가중요소 .....	44
2. 유해식품범죄에 대한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51
가. 감경요소 .....	52
나. 가중요소 .....	53
제4절 식품범죄의 법적용상 문제점 .....	57
1. 복잡한 식품범죄체계의 문제점 .....	57
가. 법집행의 어려움 - 복잡한 식품범죄의 출처 .....	57
나. 실정법 체계내에서의 모순점 .....	59
다. 양형기준 세부유형의 흠결 .....	60
2. 불량식품범죄 개념구성의 문제점 .....	60
가. 개념의 검토 .....	60
나. 새로운 개념의 정립 필요성 .....	62

**제3장 부정·불량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대책 ..... 63**

제1절 형사제재의 정비를 통한 대처방안 .....	63
1. 동종 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안 .....	63
가. 최저형량제도의 확대도입과 기존 형벌의 상향조정 .....	63
나. 동종재범에 대한 실형선고 및 식품사업 불허 등 처벌강화 .....	66
2. 범죄수익의 몰수와 부당이득환수제도 확대 .....	67
3. 유아·아동대상 식품범죄에 대한 대책 .....	68
4. 비형벌적 제재의 적극 활용 .....	70
제2절 부정·불량식품사범에 대한 단속강화방안 .....	72
1. 신고포상금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	72
2.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단속 및 수사상 문제점 개선 .....	74

**제4장 요약 및 결론 .....** **76**

**<참고문헌>**

**그림 차례**

<그림 1> 범죄의 수사단서(특별법범) .....	27
<그림 2> 범죄의 수사단서(식품위생법 위반사건) .....	28
<그림 3> 식품위해정보 수집건수(식품의약품안전처) .....	32
<그림 4> 범죄자 처분결과-기소유예율 .....	36
<그림 5> 범죄자 처분결과-구약식 기소율 .....	37
<그림 6>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자의 범행당시 연령분포 .....	38
<그림 7>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의 범죄자 전과 .....	39
<그림 8>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1399) 조치 .....	73

## 표 차례

<표 1> 식품제조·가공업체 유형별 위반 현황 .....	33
<표 2> 식품판매업체 유형별 위반현황 .....	33
<표 3> 식품제조·가공업체 행정처분별 현황 .....	34
<표 4> 식품판매업체 행정처분별 현황 .....	34
<표 5> 식품사범 발생·검거현황(2002~2011년) .....	35
<표 6> 식품위생법 위반사건 제1심 형사공판사건 접수 .....	36
<표 7> 식품관련 법률 및 소관부처 .....	58
<표 8>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포상금 지급건수 및 금액 .....	74

## 제1장 서론

### 제1절 문제의 제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최초로 제정된 식품관련 법규는 1962년 1월 20일자로 공포된 식품위생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이다<sup>1)</sup>. 그런데 그 시행을 위한 후속 법규가 없는 상태로 몇 년이 지나간 사이에 식용색소에 대한 만성 독성 문제가 제기되어 식품첨가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sup>2)</sup>. 그 이후 60~70년대를 거치면서 콜레라와 비브리오 식중독 사건<sup>3)</sup>, 환만식초(양조식초의 일종)의 유헤론 시비<sup>4)</sup> 등 식품위생·안전성 논쟁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크게 높아진 2000년도에 들어서도 학교급식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발생(2006), 김치 기생충알 및 납 검출(2005), 새우깡 이물질 검출(2008), 흑삼가공제품

- 1) 식품위생법의 역사에 관하여는 신광순, 과거를 보고 미래를 연다: 우리나라 식품위생 정책의 역사, 지상사, 2011, 15쪽 이하 및 남재봉,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5권 제2호, 1998, 6쪽 이하 참조.
- 2) 2000년에 식품산업 집단인 국제식품정보위원회(International Food Information Council)는 인공첨가제가 천연첨가제만큼 안전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던 와중에 “잠정적으로 등록된 200가지 색소 첨가제 중에서 아흔 가지는 안전한 것으로 등록되었으며 나머지는 FDA에 의해 사용금지되거나 기업체에서 사용을 중단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한 바 있다: 식품첨가제의 안전성에 대하여는 랜덜 피츠제럴드 저/신현승 역, 100년 동안의 거짓말, 시공사, 2008, 125쪽 이하 참조.
- 3) 1969년 8월부터 9월까지 한달 동안 전라남북도 및 충청남도 서남해안 일대에서 콜레라가 발생해 1,538명의 환자와 137명의 사망자를 낸 사건과 어패류에 의한 집단 식중독(비브리오 식중독 원인균인 준출혈성균이 발견)이 발생하여 18명이 죽고 95명의 환자가 발생한 사건을 통칭하여 이름.
- 4) 1972년 2월 10일자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환만식품(식초회사) 대표를 인체에 해로운 공업용 방부제 포름알데이드를 혼합한 부정식초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입건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

벤조피렌 검출(2007), 분유에서 대장균검출(2010) 등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사고는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건강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식품안전과 관련하여서는 2008년 6월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식품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대응, 생산·판매의 금지, 추적조사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위해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과학적 식품안전관리의 토대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하여 소비자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마련<sup>5)</sup>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매체에서 부정·불량식품에 대하여 취재·보도하는 프로그램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같은 양상은 먹거리 위험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증가와 더불어 먹거리가 가지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위험’이라는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2011년 기준으로 생산액 40.3조원(국내총생산의 3.26%, 제조업 총생산의 11.61%를 차지함)으로 전체 생산의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6)</sup> 또한 식품 등의 수입액은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늘어나 2011년에는 총 수입액이 132억달러에 달하였다<sup>7)</sup>. 소비자의 식품안전 기대치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식품행정 인프라나 공급자의 안전수준은 소비자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서<sup>8)</sup>,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강력하고 공정한 처

5) 강석구 외, 위해식품의 제조·유통과정상 불법유형 및 실효적 단속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14쪽 참조.

6) 특히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증가추세는 두드러지는데 2008년~2011년 동안 평균 14.5%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도 일반판매업이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2008년 55,819개소→2011년 80,181개소). 또한 매출액은 2010년에서 2011년새 28.2%가 증가하였고, 홍삼제품과 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이 전체의 64%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2012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14호, 56쪽.

7) 식품의약품안전청, 2012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14호, 52-53쪽.

8)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조사는 ‘통계청 2012 사회조사보고서(보건, 교육, 안전, 가

벌과 그로 인한 재범방지를 피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부정·불량식품범죄와 관련된 범죄의 발생 및 처리현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수사기관(경찰청 및 대검찰청)의 공식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각급법원의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한 판결문을 통해 양형이유를 검토하여 재범억제요인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일부개정 2013. 7. 30, 법률 제11986호, 시행일 2014. 1. 31.]의 규정 개정과정에서 논의되어 입법화된 최저형량제와 부당이득환수제 확대의 필요성과 외국의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앞으로의 식품관련 범죄에 대비하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제2절 불량식품의 개념과 형사처벌대상으로서의 식품범죄

### 1. 불량식품의 개념

#### 가. 현행 식품관련법상의 불량식품 개념

현행 식품위생법상에는 ‘불량식품’에 대한 개념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불량식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정·불량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134호, 2012. 12. 28. 일부개정)밖에 없으며, 이 고시에서도 불량식품을 개념화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는 전적으로 해석의 영역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전적인 의미로서 ‘불량식품’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족, 환경), 2013. 1. 참조. 본 인식조사에 따르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 인식 중 매우 안전 1.8%, 약간 안전 14.3%, 보통 50.5%, 약간불안전 29.0%, 매우 불안전 4.4%의 결과를 보였고, 특히 식품안전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37.0%가 정부의 관리미흡, 42.8%가 식품업체의 안전의식 부족을 들었다.

사용하여 제조하고 가공한 식품<sup>9)</sup>’이라고 정의되고 있는데, 불량식품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유해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유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식품위생법 제2조 제6호). 이에 반해 부정식품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자가 제조한 식품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데, 넓은 의미의 부정식품에 소비자를 기망하여 이미 제조된 식품을 유통시킨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기죄<sup>10)</sup>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므로 이는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

위의 것을 종합하여 해석해 보면 불량식품은 좁은 의미에서는 식품범죄상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관련 범죄 중 부정식품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서 해석되나 넓은 의미에서는 부정·불량식품 모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범주에 따라 우리나라의 불량식품(또는 유해식품)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부패·변질된 위해 우려 식품 등

부패·변질된 위해 우려 식품이란 상하거나 색이 변한 식품, 이상한 맛

9) Daum 어학사전. 영어로 adulterated food라고 표기하고 있다. 미국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에 따르면 이 용어는 ‘연방 또는 주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도록 제조된 모든 식품’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1) 독성 또는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것, 2) 오염된 식품 뿐만 아니라 3) 필수적인 요소가 빠져 있거나 다른 물질로 대체되어 있는 식품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 USC §342).

10) 실제로 식품범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식품위생법상 구성요건이 자세한 우리나라와 달리 식품위생위반사범에 대해 사기죄를 주로 적용하는 대만에서는 아예 ‘식품사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리즈형, 대만의 식품안전/사기와 범죄문제, 제3회 경찰대학 국제학술세미나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한국경찰의 치안정책’-외국의 선진제도 고찰을 통한 비교연구, 2013. 10. 25. 자료집 137쪽 이하..

이나 냄새가 나는 식품을 말하는데 미생물 성장에 의한 관능적 변화, 화학적·물리적 손상, 냉동상태에서 수분변화, 이물질에 의한 오염등의 특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갑은 부산시에서 A물류를 운영하며 식품제조가공업에 종사하면서 2011년 7월 경 냉동창고에서 실제 제조일자가 2007년 11월 경인 피뿔고동의 제조일자를 2011년 5월 18일로,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각각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피뿔고동 140킬로그램을 음식점 등에 판매하고, 남은 피뿔고동 168킬로그램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사건<sup>11)</sup>에서 갑은 유통기한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냉동창고의 고장으로 부패·변질되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라를 해동하여 진물을 세척한 후 비닐용기에 소규모로 포장하여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중국집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도매상에 공급함으로써 국민보건에 상당한 위해를 끼쳤다는 점이 양형가중 사유로 참작되었다.

## 2) 유독·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위해 우려 식품 등

여기에는 미승인 농약·첨가제를 사용하였거나,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위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곰팡이 독소 등이 함유되어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이 포함된다.

한 예로 갑·을·병은 공모하여 2003년 4월 중순 A마트로부터 곰팡이가 피었거나 변질이 되어 심한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갑이 반품 받은 불결한 건오징어 200척 상당을 을에게 공급하고, 병은 이를 조리하여 같은 달 4월부터 8월까지 모두 23회에 걸쳐 위 식당을 찾아온 학생과

11) 부산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2고단382 판결.

교직원 등에게 식사 밀반찬 등으로 판매하고, 갑은 A마트로부터 반품받은 불결한 건오징어 350축 상당을 1킬로그램 당 5,500원 합계 180여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갑은 벌금 1천만원, 을과 병은 각각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받은 사안<sup>12)</sup>에서 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곰팡이 같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닌 식품첨가물로 인하여 인체에 위해를 미칠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가. 현재 우리 법상으로는 식품공전에서 사용해도 좋은 식품첨가물을 규정하고 있고, 허용치를 넘지 않게 사용하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일본에서 1948년 식품위생법이 시행되었을 때 식품첨가물로 식품에 넣어도 좋은 60종류의 화학물질이 정해졌는데(포지티브 리스트), 이는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한다<sup>13)</sup>. 포지티브 리스트의 경우에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된 것만 허가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위험한 것은 일체 사용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그 후 사용해도 좋은 식품첨가물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1955년 모리나가 유업에서 생산한 분유를 먹은 아기가 고열을 일으키는 사태가 각지에서 속출한 사건(모리나가 비소 분유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때 문제가 되었던 것이 분유에 유질 안정제로 첨가하였던 인산나트륨이었다. 그런데 모리나가 유업이 사용한 것은 비소가 포함되어 있었던 질 나쁜 인산나트륨이었으며, 그후 17년 동안 이 회사는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다가 1972년에 이르러서야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첨가물 행정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1955년에는 인산나트륨, 비타민, 아미노산 등 자연에 존재하는 화학

12) 대구지방법원 2003. 11. 7. 선고 2003고단6475 판결.

13) 야마모토 히로토 저/손성애 역, 오염된 몸 320 킬로그램의 공포, 여성신문사, 2006, 80쪽.

물질이라도 화학합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화학합성첨가물로 지정받게 되었으며, 1958년에는 213개의 첨가물이 새로운 식품첨가물로 인정받게 되면서 식품첨가물의 대량소비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이다<sup>14)</sup>. 식품첨가물은 여전히 독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식품첨가물들은 식품에 첨가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해의 우려만으로는 제재할 수 없고, 그 양만을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 3) 사용이 금지된 물질 함유 식품 등(성기능 개선제·다이어트·관절염 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 사료용 원료 등)

최근 들어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는 범죄 중 하나로서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을 (건강기능)식품에 혼입하여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다음의 사안도 이에 해당하는 예이다.

[1] 갑은 2007년 3월경부터 2012년 1월 11일 경까지 시부트라민을 사용하여 제조된 ㄱ세트(A, B, C) 및 ㄴ세트(아침용, 저녁용) 제품 합계 2,362세트(2억여원 상당)를 판매함. [2] 갑은 2009년 10월경부터 2012년 1월 11일 경까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후박 20킬로그램을 사용하여 ㄴ제품 총 1,862세트(1억5천여만원 상당)를 제조하여 판매함. [3] 갑은 2007년 3월 경부터 2008년 3월경까지 갑의 자택인 서울 동대문구에서 신원불상의 무신고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시부트라민이 함유된 ㄱ세트 제품을 30그램 단위로 나누어 표시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ㄱ(A,B,C) 약포지에 담아 소분하고, ㄱ제품 총 258세트를 피부관리실 등에 판매하면서 제조업소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재료명 및 함량

14) 야마모토 히로토 저/손성애 역, 오염된 몸 320 킬로그램의 공포, 여성신문사, 2006, 81쪽.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인 소분된 제품을 샘플로서 함께 제공하여 영업상 사용함. [4] 갑은 2007년 3월 경부터 2008년 3월 경까지 갑의 자택인 서울 동대문구에서 관할구청장에게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신원불상의 무신고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시부트라민이 함유된 ㄱ 제품을 약 30그램씩 소분함. 또한 2009년 10월 경부터 2012년 1월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소재 K공학 작업장에서 관할구청장에게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ㄴ세트 제품을 90그램과 600그램 단위로 소분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사안<sup>15)</sup>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위 사안에서 사용된 시부트라민(sibutramine)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식약청장이 2006년 4월경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부트라민의 위해성을 알리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는 등 시부트라민의 위해성에 대하여 꾸준히 홍보하여 왔다<sup>16)</sup>. 그런데 약사인 피고인이 2003년경부터 아로마 다이어트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거나 직접 제조하여 판매한 비만치료제에 시부트라민 등 식품에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 부작용이나 위해성이 경미하다는 자의적인 판단 아래 상당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판매한 것이다.<sup>17)</sup>

#### 4) 불법 도축, 병든 고기나 그 원료로 만든 식품 등

[1] 피고인 갑은 을 등과 공모하여 2005년 9월부터 2006년 2월까지

15) 부산지방법원 2012. 5. 31. 선고 2012고단1386 판결.

16) 2013년 8월에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등의 효과를 광고하며 판매중인 제품 가운데 미국에서 제조한 제품 가운데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조치한 사실이 있어 여전히 같은 범죄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해성분 검출 '다이어트 표방 식품' 회수·폐기 조치, 식약처 보도자료, 2013. 8. 14.

17) 동 피고인은 2003년에도 화학적 합성품인 공업용 에틸알코올을 사용하여 제조한 아로마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한 범죄로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여차례에 걸쳐 병으로 쓰러지거나 폐사한 젓소를 허가받지 아니한 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였고, [2] 피고인 을은 2005년 9월 난산으로 쓰러진 젓소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갑의 작업을 보조하였으며, 피고인 정은 갑에게 이 사건의 폐사한 젓소를 처리해달라고 갑에게 부탁하였으며, [3] 피고인 병은 위 갑이 처리한 젓소 중 일부를 2백만원을 주고 구입한 후 냉장고에 넣어두어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면서 식육포장처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갑은 징역 1년, 을은 징역 8월, 병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 사회봉사명령, 정은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은 사안<sup>18)</sup>의 경우 갑 등을 형사처벌한 이유는 폐사된 소나 병으로 죽거나 죽음에 임박한 소의 경우에는 공중의 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폐사된 소나 기립불능 소의 경우에는 부르셀라발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전염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를 식품으로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 5) 유독·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용기·포장

샌드위치 등 포장지에 툴루엔이 과다검출된 사건(2004년 6월)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식품포장지의 툴루엔 잔류 자율규격기준(1996년 한국식품공업협회 마련)에 의해 관리되어 오던 것을 제곱미터당 2mg/m<sup>2</sup> 이하로 정한 예가 있다.<sup>19)</sup>

### 6) 유해 물질 기준·규격 부적합 식품 등(기준 초과 검출 농약·동물용 의약품, 곤충·금속 등 이물 혼입 식품 등)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6. 6. 28. 선고 2006고단279, 2006고정143(병합) 판결.

19) '식품포장 유해물질 관리 강화' 2004. 6. 28. 약업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밝힌 2012년 상반기에 보고된 식품이물 발생건수는 총 200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9% 감소하였고, 이물 보고 의무화가 시작된 2010년에 비해서는 약 44%가량 줄어들었는데, 이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이물은 벌레와 곰팡이로 주로 개봉 후 일정기간 섭취하는 시리얼류, 특수용도식품, 초콜릿류 등이 이물 혼입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sup>20)</sup> 특히 오징어 가공제품에서 곰팡이가, 만두피에서는 금속물질이, 김치제품에서 개구리가 각각 발견되어 식약처에 신고된 바 있다<sup>21)</sup>.

### 7) 비위생적으로 제조·조리, 재사용한 식품 등(대장균 검출 냉면, 남은 반찬 재사용 식품 등)

식품접객업에서 위생점검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반찬 재사용 등이다. 지난 2011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 의원이 제출 받은 위생점검내역을 분석한 결과 음식물을 재사용한 업체는 과징금 1,590만원을 부과받았고, 한 치킨프랜차이즈는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였다.<sup>22)</sup>

### 8)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된 식품 등

2013년 7월 26일에는 신종 발기부전 치료제 변형성분 등이 함유된 제품을 국내에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밀반입하여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식약처에 의해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발생했다. 이 제품에서 검출된 신종 실데나필 유사 성분은 기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의

20) '어묵에 마대자루 조각, 오징어에 담배꽂초' 2012. 8. 8. 이데일리

21) '도내 식품업체 4곳 이물질 검출' 2012. 8. 11. 강원도민일보.

22) '남이 먹던 음식 재탕 당연?' 음식점 위생불량 천태만상, 2011. 6. 22. 쿠키뉴스

화학구조를 임의 변형한 것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판명되었다.<sup>23)</sup>

### 9) 제품의 성분(함량), 품질, 가격 등을 속인 식품 등(가짜 참기름·고춧가루·벌꿀 등 가짜 식품 등)

제품의 성분(함량), 품질, 가격 등을 속인 식품의 대표적인 예로는 가짜 참기름 제조를 들 수 있다. 갑은 부산시 소재에 K라는 상호로 식자재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C가 참기름에 옥수수기름등을 혼합하여 만든 리놀렌산이 약 7.14%나 함유된 가짜참기름을 그 정을 알면서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07년 1월 26일경 K에서 손님들에게 C로부터 공급받은 가짜참기름 1.8리터 84병(5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년 10월 28일경까지 총 111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시가합계 3천5백만원 상당의 옥수수기름 등이 혼합된 가짜참기름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식품제조 등) 및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용한 바 있다.<sup>24)</sup>

### 10) 성분, 영양가, 신고사항 등 허위표시 식품

주식회사 D식품은 정읍시 소재 K농공단지에서 ‘바이타C’, ‘영지생’ 등의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면서 홈페이지 상에 ‘바이타C’, ‘영지생’의 제품과 관련하여 그 구성성분인 영지버섯과 비타민C가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23) ‘발기부전치료 성분 함유 식품 또 적발’ 2013. 7. 26. 청년의사

24) 부산지방법원 2009. 9. 22. 선고 2009고단2323 판결.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통하여 효능이나 효과의 게시내용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sup>25)</sup>을 받게 된 사안처럼 식품의 경우에는 특정 질병치료에 대한 광고나 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11) 병원성 미생물 등에 오염된 위해 우려 식품 등(식중독 유발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등)

지난 2013년 4월 12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입산 냉동수산물(냉장수산물(선어)로 둔갑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수산물을 판매한 혐의로 A 등 6명을 조사<sup>26)</sup>하였는데, 현행법상 냉동 상태로 반입된 수입수산물은 이를 해동해 유통할 때는 해동한 당일만 냉장판매해야 하고, 상온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특히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생선은 상온에서 하루만 방치해도 식중독을 일으키는 양의 히스타민(단백질 분해로 생성되는 물질)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다음달인 5월에도 대형마트에서 유사한 행위가 적발<sup>27)</sup>되었는데 특히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 식중독 유발성 세균을 철저히 막아야 할 유통업체에서 냉동식품을 냉장식품으로 유통시키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의 한 형태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 12) 성분·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 등(성분·규격 부적합 식

25) 전주지방법원 2006. 7. 6. 선고 2005구합2619 판결.

26) '유통기한 지난 냉동수산물 마구 유통' 2013. 4. 12. 매일신문.

27) '냉동생선 불법유통 대기업 업벌 마땅' 2013. 5. 29. 경북일보.

## 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

예를 들면 환각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한약재인 마황<sup>28)</sup>이나 목통 등은 다이어트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첨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성분을 넣어 식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범죄가 된다.

### 13) 무허가·무신고 식품 등

예를 들어 갑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조개나 삼겹살 등을 인근 도매점에서 구입한 후 이를 조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고객들에게 판매하면서 그 포장마차 안에 설치되어 있는 화로, 석쇠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즉석에서 조개 등을 구워먹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하였는데, 이 때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 제7조가 적용되었다.<sup>29)</sup>

이처럼 식품위생법은 영업종류,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영업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무허가 영업을 하거나 식품을 제조하는 때에는 당해 식품은 부정식품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14) 원산지를 속인 식품 등(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식품 등)

28) 마황을 장기간 다량으로 복용하면 환각, 심장마비, 부정맥, 어지럼증, 불면증, 혈압상승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하자 오히려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대표가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환각작용 있는 마황 섞어 다이어트 식품 제조’ 2010. 10. 19. 매일경제).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4. 6. 23. 선고 2003고정114 판결.

우리나라 현행법상 원산지를 속인 식품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의율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식품위생법이나 관세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갑은 자금을 투자하여 C와 함께 2007년 10월경부터 광주에서 208.98㎡의 면적에 'E'라는 상호로 쇠고기 등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음. 갑은 C와 공모하여 2007년 10월 30일경부터 2008년 8월 21일 경까지 사이에 E음식점에서 위 시간 동안 광주 북구 소재 G광주지사 등 3개 업체에서 미국산 진갈비살, 호주산 갈비살, 호주산 사골, 호주산 불살, 호주산 목심, 뉴질랜드산 목심 등을 구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갈비살 등을 조리, 판매하면서 업소의 외부간판에 '한우전문점', 메뉴판에 '국내산 한우' 등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국내산 한우가 사용되는 것처럼 표시하여 식육의 원산지 등 표시에 관하여 허위 표시를 하고 함께 7천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에게는 벌금 150만원이 최종 확정 선고되었다.<sup>30)</sup>

### 15) 유통기한 위·변조 식품 등

식품의 유통기한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식품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불량식품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1) 2004년 10월 하순 일자 불상경 J수산 지하 1층 사무실에서, J수산에서 항공사 기내식용으로 납품하는 냉동식품인 '큰왕새우튀김'을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H로부터 매입해 두었으나 위 식품의 원래 유통기한인 2001년 12월 18일이 경과하도록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위 회사의 냉동창고 등에 보관해오던 중, 당초 주식회사 H에서 제작하여 부착한 위 큰왕새우튀김 제품 550마리 137,500원 상당의 유통기한

30) 광주지방법원 2009. 8. 19. 선고 2009고정 499 판결.

‘2001년 12월 18일’ 라벨을 떼어내고, 워드프로세서를 가지고 임의로 라벨을 제작하여 그 라벨의 유통기한 공란에 일부인과 스탬프인크를 사용하여 ‘2005년 3월 28일’로 새로 유통기한을 표시한 후 그 라벨을 위 큰왕새우튀김 제품에 부착하여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03년 12월 경부터 2004년 10월 하순 일자 불상경까지 사이에 위 큰왕새우튀김 제품 총 5,300마리 1,325,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판매일로부터 유통기한이 향후 3개월가량 남은 것으로 허위표시하여 식품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한 사안에서 갑에게 유통기한 허위표시벌금 2백만원(확정)을 선고하였다.

## 16) 질병치료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되게 광고하는 식품 등

예를 들어 피고인 갑은 D무약주식회사 이사이고, 피고인 D무약주식회사는 식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갑과 을은 1998년 7월 서울 소재 위 회사에서 A일보 3면 5단에 회사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은행잎차인 ‘킹코톤’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면서 ‘사람이 섭취했을 때 인체의 콜레스테롤을 분해, 혈액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식품의 품질에 관하여 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사안<sup>31)</sup>처럼, 일반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으로 공인받았을 뿐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아니한 이상,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인 식품에는 그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처음부터 의약품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그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식품에 관한 표시나 광고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그 자체로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서 소비자의

31) 서울지방법원 2001. 3. 29. 선고 2000고단4849 판결.

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식품에 관한 표시와 광고를 규제하는 식품위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 17) 어린이 현혹 저가·저품질 정서 저해 식품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변별력이 부족한 어린이에게 소위 미끼 상품을 이용하여 호기심을 자극하고 무분별한 구매를 부추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끼상품을 이용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10조).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의 구매를 부추기기 위하여 텔레비전, 라디오 및 인터넷에서 장난감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할 경우 식약처의 단속대상이 되며 적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불량식품 개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량식품을 ‘품질이 바람직한 기준보다 떨어지는 식품으로서 위생측면뿐만 아니라 영양가, 기호, 포장상태 등이 기대되는 기준보다 떨어지거나 결함이 있는 식품’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협의의 불량식품이란 부패·변질되거나 발암물질 등이 함유되어 인체에 유해한 식품을 말하지만, 광의의 불량식품이란 협의의 식품에 더하여 허위광고 등 소비자를 속이는 모든 식품을 의미한다고 하여 다소 광범위하게 정의 내리고 있다<sup>32)</sup>.

32) 이하의 내용은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 2013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정책 추진계획, 2013. 3. 20., 13면 이하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동시에 1) 사용이 금지된 원료나 물질을 식품에 사용하는 악덕행위(유독·유해물질, 미승인 농약, 사료용 원료 등을 식품에 넣어 제조·가공·판매), 2) 제품의 품질, 가격, 원산지 등을 속여 판매하는 기만행위(가짜참기름, 신선도가 떨어지는 원료에 색소를 사용하여 판매), 3) 정식으로 인·허가나 신고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국내 무신고 제품판매, 온라인 구매 대행을 통한 불법 수입식품 판매), 4) 저가·저품질 제품으로 어린이를 현혹하는 소비자 심리 악용 행위(담배, 화투모양 과자 등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이나 미끼 상품 판매), 5)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거나 재사용하는 비양심적 행위(세균수 초과냉면, 식중독균 검출 김밥 등 판매, 사용반찬 재활용<sup>33)</sup>) 등을 대표적인 불량식품범죄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 다.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에서 제시한 불량식품 개념

2013년 4월 12일 발의되었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sup>34)</sup>에 따르면 ‘부정식품’이란 비정상적으로 제조된 식품으로 1) 내용물의 무게, 중량, 크기 등을 변조한 식품, 2)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 오인·혼동될 수 있도록 표시된 식품, 3) 다른 성분을 사용하거나 모방한 식품, 4) 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표시되거나 다른 회사 제품에 포함시켜 판매하여 다른 회사 제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식품, 5) 그 밖에 비정상적으로 제조된 식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안 제2조 제1의2호)을 말하고, ‘불량식품’이란 기준 및 규격이 부적합한 식품과 위해물질 함유식품으로 1) 값싼 원재료, 공업용 첨가제 등 품질을 저하시키는 물질을 혼합하거나 사용한 식품, 2) 성분의 전체 또

33)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제작팀,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동아일보사, 2013, 317쪽.

34) 한선교 의원 등 10인 발의. 2013년 4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임. 법률안의 내용은 <http://likms.assembly.go.kr>(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참고함.

는 일부가 질이 낮은 다른 성분으로 대체된 식품, 3) 중요한 성분 및 영양소 등 반드시 필요한 특정성분이 빠져있는 식품, 4) 쉽게 부패되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상한 상태를 속이기 위하여 색깔을 입히거나 섞거나 분말(코팅)화한 식품, 5) 독성이 있거나 인체에 유독·유해한 물질을 사용한 식품, 6) 썩었거나 상하고 불결한 동물·식물 원료나 사료용 재료를 사용한 식품, 7) 그 밖에 기준 및 규격이 부적합한 식품과 위해물질 함유식품(안 제2조 제1의3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하는데, 누구든지 부정식품·불량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3년 3월 28일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sup>35)</sup>에서도 불량식품을 ‘제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해한 식품을 말한다(안 제4조 제8호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외국의 불량식품 개념

### 1) 미국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s Act)

미국 연방 FDCA 제342조<sup>36)</sup>에 따르면 불량식품 또는 위해식품(adulterated food)은 1) 더럽거나 악취가 나거나 부패한 식품, 2) 유독·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식품, 3) 인위적으로 유독·유해 물질을 첨가한 식

35) 신학용 의원 등 14인 발의. 2013년 3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현재 국회에 계류중임. 본 법률안의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참고함.

36) 미국 해당법률은 [http://www.house.gov/legcoun/Comps/FDA\\_CMD.pdf](http://www.house.gov/legcoun/Comps/FDA_CMD.pdf)에서 참조함.

품, 4) 미승인 동물용 의약품을 함유한 식품, 5) 안전하지 않은 색소 (Color additives)를 함유한 식품, 6) 미승인, 사용 금지된 첨가물을 사용한 식품, 7) 위해 성분이 함유되어 표시방법에 따라 섭취하였음에도 질병 또는 상해가 우려되는 식품, 8) 불법도축, 병든 고기나 그 원료로 만든 식품, 9) 유독·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 용기, 10) 기준 초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식품, 11) 허용외 방사선 조사 및 기준 초과 식품, 12) 비위생적 제조·포장·취급된 위해 우려 식품, 13) 수입이 거절된 식품 또는 중량·크기·회사명·신고사항 등 허위표시 제품, 14) 필수 성분 부족, 다른 성분 대체, 품질 기망 등으로 원래보다 가치를 높게 만든 식품<sup>37)</sup>을 의미한다.

## 2) 일본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

일본 식품위생법 제6조<sup>38)</sup>에서는 1) 부패하거나 변질된 것 또는 미숙한 것, 2)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그 물질이 부착 또는 이를 의심할만한 것, 3)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어 사람의 건강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 이 물질혼입 또는 첨가 기타 사유로 사람의 건강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식품 또는 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공,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므로,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식품을 위해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보다는 그 범위가 다소 좁은 것으로 보인다.

37) 21 USC §342(Adulterated food): 1) Poisonous, insanitary, etc., ingredients, 2) Absence, substitution, or addition of constituents, 3) Color additives, 4) Confectionery containing alcohol or non-nutritive substance, 5) Oleomargarine containing filthy, putrid, etc., matter, 6) Dietary supplement or ingredient: Safety, 7) Dietary supplement: manufacturing practices, 8) Reoffer of food previously denied admission, 9) Noncompliance with sanitary transportation practices [offense 31.1]

38) 일본의 식품위생법 원문은 <http://law.e-gov.go.jp/>에서 검색함.

### 3) 캐나다 식의약법(Food and Drugs Act 1985) 및 캐나다 식품안전법(Safe Food for Canadians Act 2012)

캐나다식품안전법 제4조에서는 식의약법 제4조에서 금지하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 식의약법 제4조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1)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나, 2) 사람이 소비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 3) 전부 또는 일부가 오염되었거나 썩거나 병든 동식물로 구성된 식품을 파는 행위와 4)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제조, 준비, 보존, 포장 또는 저장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sup>39)</sup>하고 있는데, 미국과는 달리 4)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따로 금지하고 있다<sup>40)</sup>. 위의 4개 항목은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상 구성요건보다 좁은 편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추상적인 규정인 제4항을 두고 있으므로, 불량식품의 개념이 오히려 넓은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동법 제3조에서는 일반인에게 식품이나 화장품 등이 질병 등 신체적인 상태를 치료하거나 예방한다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다.

### 4) 영국 식품법(Food Act 1984) 및 식품안전법(Food Safety Act 1990)

39) 캐나다 해당법은 <http://laws-lois.justice.gc.ca>에서 검색함.

40) Food and Drugs Act 1985(최종개정: 2013.5.26.) §4. (1) No person shall sell an article of food that (a) has in or on it any poisonous or harmful substance; (b) is unfit for human consumption; (c) consists in whole or in part of any filthy, putrid, disgusting, rotten, decomposed or diseased animal or vegetable substance; (d) is adulterated; or (e) was manufactured, prepared, preserved, packaged or stored under unsanitary conditions.

영국의 식품법 및 식품안전법은 위해식품에 대하여 일반적인 항목을 두고 있지 않고, 각각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해식품(또는 판매금지식품)의 종류로는 1) 고의로 사람이 소비하기에 부적합한 식품(Food unfit for human consumption)을 제조하는 등의 행위(식품법 제8조), 2) 유제품의 경우 사람이 소비하는데 판매할 목적인 우유에 대하여 물, 색소 또는 분유나 농축유를 섞어서 제조하거나 이를 판매·진열하는 행위(제36조 제1항), 3) 병든 소로부터 우유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제35조 제1항)를 식품위해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sup>41)</sup>.

## 2. 식품관련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 가.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식품위생법 제4조에 의하면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라는 표제하에 ‘누구든지

-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3)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1) 영국의 해당법은 <http://www.legislation.gov.uk>에서 검색함.

- 5)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 후단의 유형(제1유형)은 위해식품으로서 판매 등을 금지하는 반면에, 제5호 전단, 제6호, 제7호의 유형(제2유형)은 준위해식품으로써 위해식품은 아니지만 위해식품에 준해서 판매 등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파악된다. 어의적으로는 위해식품과 위해식품은 별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유해에 대한 정의규정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두고 있는 것(제2조 제6호)을 감안할 때 양자의 개념은 법률상 동의어라고 판단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 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형사처벌 대상

주의할 점은 '위해식품'이라는 법률용어와는 달리 '부정식품'이라는 법률용어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이라는 표제하에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및 제4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사람,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한 사람, 2)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3) 그 사실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4) 식품위생법 제6조, 제7조 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가공한 사람, 5)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행위자가 불법성이 보다 큰 행위를 행할 경우에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법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법에 따르면 부정식품이란 '일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판매된 식품'이라고 분석된다.

## 다. 기타 식품관계 법률에서의 형사처벌 대상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①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물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행위, ②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시·광고행위, ③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유사표시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④ 식약처 고시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진열행위, ⑤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혼합비율·함량

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3조에서는 위해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진열하는 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 2)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②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③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가 위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4조 및 제15조)

## 3) 축산물위생관리법

①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또는 병과)을, ② 농수산부장관이 고시한 가공기준이나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한 가축 또는 판매 목적 수입 축산물의 도살·처리, 집유 및 가공 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한 방송사에서 크게 문제삼았던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 4) 기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7조 등에 따라 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②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③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 제2장 부정·불량식품범죄의 실태 및 문제점

### 제1절 식품산업과 식품범죄

#### 1. 식품범죄에 대한 인식과 한계

경찰청은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을 뿌리뽑는 일환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 근절을 위한 1) 위해식품수입·제조·유통·판매, 2)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 3)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장광고, 4)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중점 대상으로 한 불량식품 집중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해마다 식품업계에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설·추석 등 명절에 식품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통계청 조사 결과 국민의 식품안전 인식도는 2008년 31%에서 2012년 66.6%로 대폭상승하였고, 식중독 환자수도 2007년 9,686명에서 2012년 6,102명으로 획기적으로 급감<sup>42)</sup>하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수준이 지표상으로는 크게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국민의 33%는 식품안전에 대하여 불안감<sup>43)</sup>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량식품에 대한 위험을 다른 사회적 위험보다 특별히 심각하게 인식하지는 않지만, 개인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써, 먹거리 위험을 다른 위험보다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징표로 보인다. 이와 같이 최근의 먹거리 위해사고는 특정계층이나 연령대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 전체에게 불안과 위험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 내지 잠재적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식품위생의 여러 요인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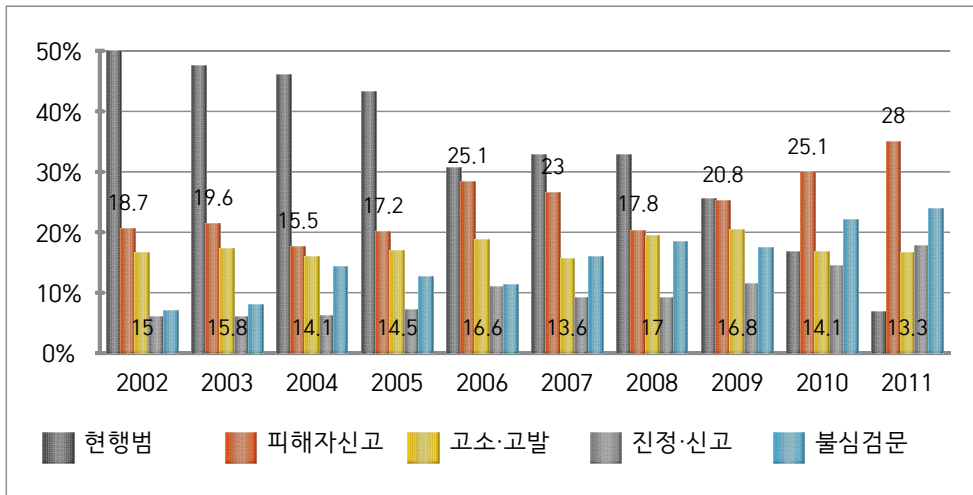
## 2. 범죄의 수사단서상 특징

위와 같은 점은 현재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다른 범죄의 유형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인데, 불량식품범죄의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사후피

42) 식품의약품안전처, 2012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14호, 55쪽.

43) 통계청 2012 사회조사보고서(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2013.1.

해의 보상이나 구제책보다는 사전예방책을 중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형사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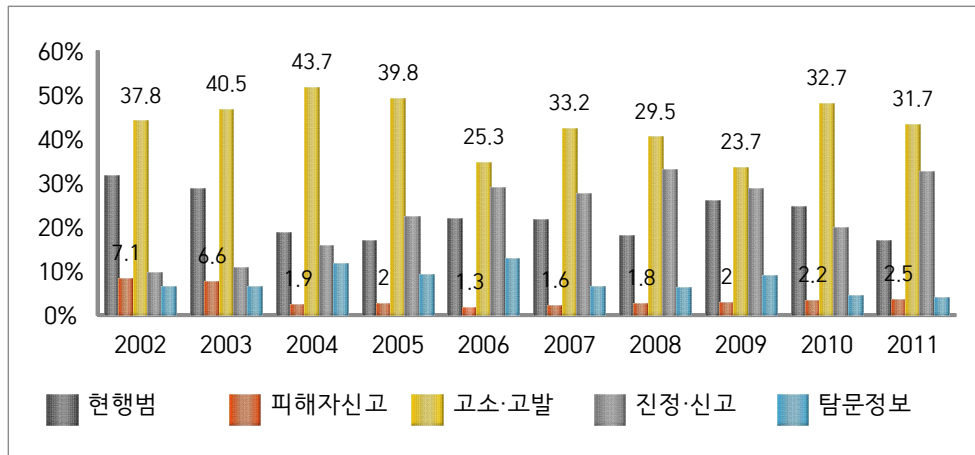
<그림 1> 범죄의 수사단서(특별법범)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2003-2012), 단위: %

실제로 식품위생법 관련 위반사건의 수사단서별 분포를 살펴보더라도, 고소·고발, 타인신고, 현행범체포, 진정·투서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피해자신고에 의한 수사는 3% 미만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현행범체포나 피해자신고, 피해자 고소가 주를 이루는 다른 형법범이나 특별법범의 경우에 있어서의 수사단서별 검거현황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속 반원에 의한 행정관청의 고발조치, 일반시민의 적극적인 신고, 현장단속 등이 검거의 주된 양상이라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 3. 부정·불량식품의 발생구조 분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약품통계연보상 부정·불량식품으로 신고되어



<그림 2> 범죄의 수사단서(식품위생법 위반사건)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2003-2012), 단위: %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2007년 338건에서 2011년 3,318건으로 5년새 약 10배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불량식품범죄의 발생구조는 여러가지 측면<sup>44)</sup>에서 살펴볼 수 있다.

## 가. 생산자 또는 공급자 측면

첫째, 생산자 또는 공급자 측면에서, 시세차익 등 경제적 이윤동기가 상존하고 있고, 적발 및 행정처분이 미약하며, 낮은 인허가 장벽으로 영업재개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1) 원산지 변조 등을 통하여 시세차익 등 경제적 이윤동기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 및 형사처분, 행정처분 등이 미약한 실정이라는 점, 2) 규제완화에 따른 식품영업자의 낮은 인·허가 장

44) 기본적인 내용은 2013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업무계획, 2013. 3. 20. 참조; 박찬걸, 불량식품범죄의 피해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한국피해자학회 2013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91쪽 이하 참조.

벽으로 영세한 산업구조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영업재개가 가능하다는 점, 3) 생산단계에서 토양·양식장의 오염, 제조과정에서 유해물질(내분비 장애물질 등) 검출<sup>45)</sup> 등 기존의 관리 영역 이외에 새로운 위해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 4) 복잡한 생산·유통·판매 경로와 관리책의 다원화로 부처간의 효율적인 정보공유 및 협력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 나. 수요자 측면

둘째, 수요자 측면에서는 1) 특정품목(다이어트, 정력제 등)에 대한 인터넷 불법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sup>46)</sup>, 2)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품 자체가 저가식품 및 색소과다첨가제품이라는 점<sup>47)</sup>, 3) 전

45)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제조과정에서 자연생성되는 신중유해물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저감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산분히 간장 제조 시 3-MCPD(탈지대두를 염산으로 가수분해하여 간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나 된장 발효시 바이오제닉 아민(단백질을 함유한 식품의 유리 아미노산이 저장 또는 발효, 숙성과정에서 미생물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설사나 복통을 유발하는 히스타민과 혈압상승을 유발하는 티라민 등이 대표적임), 육류와 생선 조리시 생성되는 HCAs(육류나 생선을 고온으로 조리시 자연 생성되는 물질로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등급 2B[발암우려물질]이나 국제적으로 식품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 등이 있다: '식약청 식품제조 과정 중 생성되는 유해물질 저감화 추진', 2009. 3. 18. 보도자료 참조.

46) 중량대비 식품수입의존도는 34.1%에 달하고 있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특정사이트 차단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견해: 박찬걸, 92쪽.

4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3년 6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코치닐 색소 이용 현황'에 따르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코치닐 색소를 사용한 식품 중 50% 넘는 수가 어린이용 식품으로 아동이 주로 먹는 캔디, 과자, 초콜릿 등 총 1,254품목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알레르기 유발 코치닐 색소 어린이 무방비 노출', 2013. 6. 20. 조인스 라이프). 코치닐 색소는 중남미 지역의 선인장에 기생하는 벌레(연지벌레)를 건조시킨 후 분말로 만들어 색소를 추출하는데, 이 연지벌레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는 코치닐을 섭취했을 경우 장애 염증을 유발하는 문제가 보고되었고, 알레르기 원인 물질로서 과민성 쇼크를 일으키거나 유전자에도 손상을 가하는 경우가 확인되어 영국에서는 어린이 음식 첨가 금지 물질로 명시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2012년에 코치닐 취급 사업자들에게 발병 사례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알레르기 유발 우려 코치닐 색소, 어린이가 50% 이상 소비', 2013. 6. 20. 메디칼월드뉴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서 지난 7월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앞 어린이 식품안전

체 국민 중 43% 이상이 하루 한 끼 이상을 외식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4) 과대·허위표시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손쉽게 구매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 다. 제도적 측면

셋째,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1) 과징금 등 위반자에 대한 처벌에 비하여 부당이득이 더 큰 구조<sup>48)</sup>라는 점, 2) 품목·업소 중심의 관리체제로 인하여 반복 위반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 3) 관계 부처간 정보 공유 및 활용이 부족하여 실효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모든 식품의 유해물질 기준은 식품위생법이 설정하고 있지만, 농산물의 생산단계 농약잔류기준<sup>49)</sup>과 축산물의 미생물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축산물기준과)에서 설정·운영하고 있어 일부 품목의 안전기준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식품 중 유해물질 검사기준, 회수 감면조치 등이 기관별로 달라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혼란을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 라. 정책환경적 측면

보호구역(그린푸드존)에서 판매되는 캔디, 과자 등 100개 식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73개 제품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되었고, 이 중 색소 혼합사용으로 부작용 증가의 우려가 있는 식품도 5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판매식품 10개 중 7개에 타르색소 사용’, 2013. 7. 3.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www.kca.go.kr).

48) 대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식품위생 사건이 발생하였을 당시 하루 매출액은 2억 2천여만원인데, 식품위생법상 최고 과징금은 하루 166만원으로 영업정지를 7일간 부과하더라도 환산하면 1천162만원으로 동 기간 매출액의 0.75%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하루 2억여원 버는 롯데마트, 1시간 매출도 안되는 과징금’ 2013. 7. 31. 매일신문).

49)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농림수산물식품부 고시 제2012-87호

넷째, 정책환경적인 측면에서는 1) 주변국에서의 식품안전사고<sup>50)</sup>, 위생취약국가를 통한 수입제품 증가 등 국경이 없어지는 현상(borderless)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2) 수입식품은 보통 수확 후 저장기간이 길고 장거리 수송을 거치면서 방부제 처리나 방사선 조사처리 등이 이루어진다는 점<sup>51)</sup>, 3) 수입식품의 경우 통관 이후의 관리체계로 근원적인 차단이 미흡하여 저가·저품질의 수입식품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4) 수입식품은 전량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중 약 0.01% 정도만을 검사하고 있다는 점<sup>52)</sup> 등을 지적할 수 있다.

## 제2절 불량식품사범의 처리실태

### 1. 식품위해사범의 발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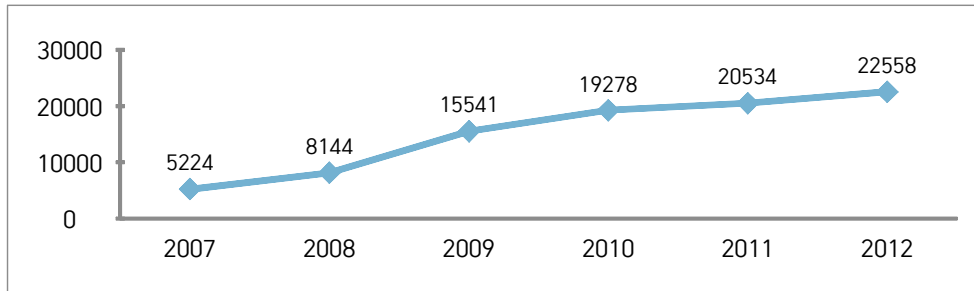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시한 건수 중 위반건수는 2008년 43,928건, 2009년 44,773건, 2010년 37,939건, 2011년 39,239건으로 먹을거리와 관련된 식품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50) 중국과 미국의 다이어트 식품 등 건강보조식품에서도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되었고, 특히 2008년에 중국산 유제품이 벨라민으로 오염된 사건이나, 최근 뉴질랜드산 분유에서 ‘박테리아’가 발견된 사건 등 식품안전사고가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뉴질랜드 총리 中 방문해 오염 분유파동 직접 사과’, 2013. 8. 13. 중앙일보).

51) 김종덕, 한국의 먹을거리 위험과 대응,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20호,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1.7. 51쪽.

52) 수입식품 검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시행하며, 1) 서류검사, 2) 관능검사, 3) 정밀검사, 4) 무작위표본검사로 나눌 수 있는데, 2011년 수입식품을 검사한 결과 전체 수입건수 312723건 가운데 부적합건수는 1,143건(0.39%)으로 이 중 서류검사 7건(0.01%), 관능검사 21건(0.08%), 정밀검사(무작위 포함) 1,115건(1.31%)로 조사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2012 수입식품등검사연보, 14쪽 (원문은 foodnara.go.kr에서 검색).

또한 식품위해정보의 수집건수도 2007년 5,224건에서 2012년 22,558건으로 약 4배 이상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2009년도에 급증한 이유는 당해년도에 설립된 식품안전정보원<sup>53)</sup>이 중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그림 3> 식품위해정보 수집건수

출처: 2013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계획, 단위: 건

## 2.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유형별 위반 및 행정제재

이 가운데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유형별 위반건수를 살펴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경우 성분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시설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다수인 반면, 즉석식품제조·가공업체의 경우에는 시설위반, 무허가, 개인위생,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순으로 위반건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	무허가	위해	시설	성분	보존·	허위	표시	개인	영업자	기
--	---	-----	----	----	----	-----	----	----	----	-----	---

53) 식품안전정보원은 2008년 7월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식품안전 종합 대책에 따라 2008년 12월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09년 7월 식품안전정보센터로 개소하였고, 2012년 2월 식품위생법 개정(제67조~제70조)에 따라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현재에는 국내외 최신 식품안전정보와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의 글로벌 식품안전 정책동향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식품안전정보센터, 5일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새출발, 2012. 2. 3. 식품음료식품신문

		(무신고)	우려 식품	위반	규격	유통 기준	과대 광고	기준	위생	준수	타
2009	3,346	64	37	426	521	73	125	623	94	339	956
2010	3,448	96	67	316	511	69	96	498	190	481	1,164
2011	3,318	31	69	308	692	19	114	500	155	356	856

<표 1> 식품제조·가공업체 유형별 위반 현황

출처: 식품의약품 통계연보(2010-2012), 단위: 건

	계	무허가 (무신고)	시설기준	허위과대 광고	표시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기타
2009	3,508	181	1,185	26	196	362	1,558
2010	1,393	22	428	16	38	240	649
2011	3,548	2	1,751	33	52	369	1,341

<표 2> 식품판매업체 유형별 위반현황

출처: 식품의약품 통계연보(2010-2012), 단위: 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은 1) 시정명령(제71조), 압류·폐기처분(제72조), 폐기처분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대집행(제72조 제6항), 위해식품 등의 공표(제73조), 시설 개수명령(제74조), 허가취소(제75조), 품목 제조정지(제76조), 타 기관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요청(제77조), 영업소 폐쇄조치(제79조), 조리사에 대한 면허취소·업무정지 명령(제80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제82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소매가격 상당 과징금 부과(제83조), 행정처분 확정후의 위반사실 공표(제84조) 등이 있다. 이 중 식품제조·가공업체 대상 주요 행정처분별 현황은 <표 3> 및 <표 4>와 같다.

	계	영업취소	영업	과징금	품목	품목	품목류	품목류	과태료	시정명령	고발
--	---	------	----	-----	----	----	-----	-----	-----	------	----

		영업폐쇄	정지		정지	과징금	정지	과징금		시설개수	
2009	3,491	273	451	79	543	38	93	22	522	1,296	174
2010	3,386	184	443	120	470	20	75	15	696	1,213	150
2011	3,318	34	642	1,221	4	128	989	205	15	58	22

&lt;표 3&gt; 식품제조·가공업체 행정처분별 현황

출처: 식품의약품 통계연보(2010-2012), 단위: 건

	계	영업취소 업체폐쇄	영업정지	영업 과징금	과태료	시설개수	시정명령	고발
2009	3,391	1,651	140	114	100	33	1,330	23
2010	1,963	677	56	785	134	27	259	25
2011	3,548	2,420	196	146	318	18	448	2

&lt;표 4&gt; 식품판매업체 행정처분별 현황

출처: 식품의약품 통계연보(2010-2012), 단위: 건

그러나 위의 <표 3> 및 <표 4>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처분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형사처분을 위한 고발조치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2011년 식품제조·가공업체 위반건수는 3,318건이나, 고발건수는 22건에 불과하고, 즉석식품제조·가공업체의 경우에는 1,724건 중 88건, 식품판매업체의 경우에는 3,548건의 위반사안 중 단 2건만이 고발조치되었다.

### 3. 식품위해사범 처리현황

#### 가. 적발 및 단속현황

그러나 위와 같은 통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한 각종 위생검사 등 단속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실지로 범죄로서 일반사범경찰 또는 특별사범경찰에 의하여 적발·단속된 건수는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 발생건수는 12,211건인데, 이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위반건수를 전체 합쳐도 약 2천여건이 모자란 수치이다. 이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간의 구성요건상의 차이 때문으로 파악된다.

구분 연도	식품위생법위반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2002	22,691	22,683	24,489	3,649	3,664	3,715	788	761	879
2003	19,362	19,210	20,963	2,823	2,773	2,906	607	623	698
2004	19,848	19,593	14,562	3,011	2,994	2,997	1,194	1,103	917
2005	14,072	13,703	14,405	1,931	1,935	2,103	1,553	1,590	1,676
2006	13,894	13,751	14,328	1,46	1,660	1,648	742	734	844
2007	10,841	10,749	11,551	1,473	1,449	1,498	520	516	566
2008	10,448	10,323	11,538	1,777	1,790	1,836	566	568	708
2009	12,212	12,093	15,322	2,590	2,580	2,625	467	460	527
2010	10,629	10,518	10,722	2,219	2,224	1,591	371	372	399
2011	12,211	11,854	12,743	88	87	92	133	129	130

<표 5> 식품사범 발생·검거현황(2002~2011년)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2003-2012), 단위: 건, 명

## 나. 법원 접수·처리 현황

이러한 식품관련 사건의 경우 발생건수에 비하여 법원에 접수되어 처리되는 건수는 매우 10% 남짓에 지나지 않는다.

구분 연도	발생·검거			법원(제1심)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접수	처리	판결선고	향소
2002	22,691	22,683	24,489	1,528	1,741	1,516	376(24.8)
2003	19,362	19,210	20,963	1,550	1,614	1,477	321(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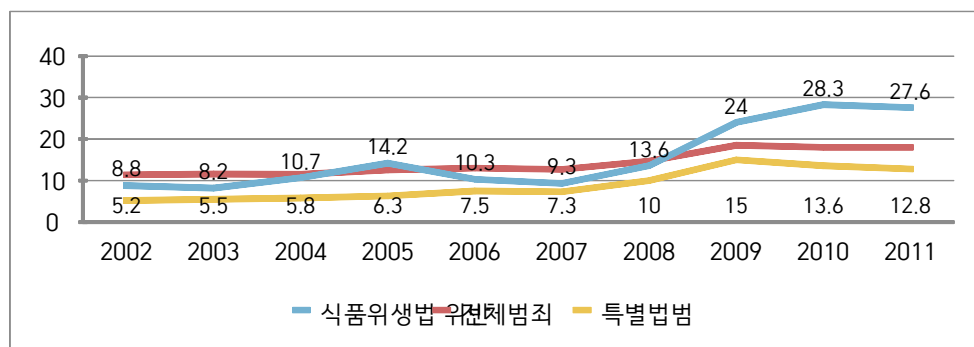
2004	19,848	19,593	14,562	2,163	2,019	1,814	309(17.0)
2005	14,072	13,703	14,405	1,790	2,027	1,792	276(15.4)
2006	13,894	13,751	14,328	1,359	1,334	1,139	184(16.1)
2007	10,841	10,749	11,551	1,448	1,384	1,108	215(19.4)
2008	10,448	10,323	11,538	1,505	1,449	1,133	220(19.4)
2009	12,212	12,093	15,322	1,431	1,414	1,152	169(14.7)
2010	10,629	10,518	10,722	1,329	1,547	1,178	253(21.5)
2011	12,211	11,854	12,743	1,338	1,261	909	187(20.6)

<표 6> 식품위생법 위반사건 제1심 형사공판사건 접수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2003-2012), 단위: 건, 명, 괄호안은 %

<표 6>을 보면, 2011년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사건으로 검거된 인원은 12,743명이지만, 제1심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1,338건, 처리건수는 1,261건, 판결이 선고된 건수는 909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중 20.6%의 사건인 187건이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게 되었다.

식품관련범죄의 처리에 있어서 형사사법당국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의 근거는 다음 그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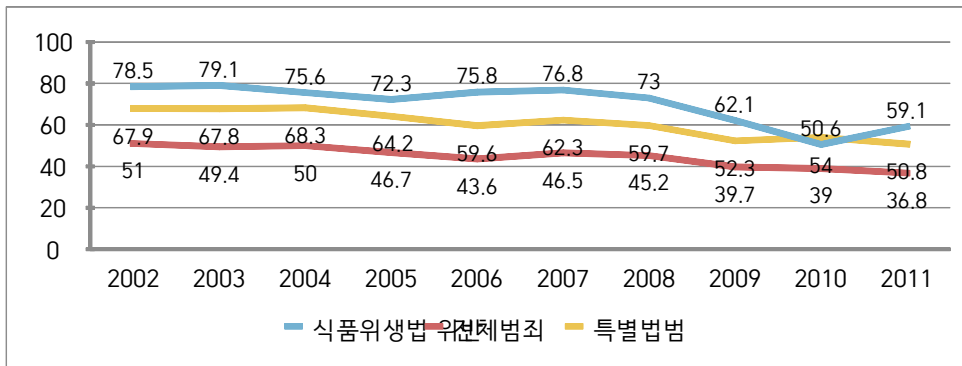
<그림 4> 범죄자 처분결과-기소유예율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2003-2012), 단위: %

최근 10년간 범죄자 처분결과를 비교해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사건의 기소유예율은 2008년을 기점으로 전체범죄나 특별법범과 비교해 보았을 때 크게 증가한 추세에 있다. 특히 2010년과 2011년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의 기소유예처분율은 각각 28.3%와 27.6%를 차지하여 전체 범죄의 18%와 특별법범 13.6%, 12.8%에 비교하여 약 2배 가량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에 대한 약식기소율도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전체범죄와 비교할 때 약 13%, 특별법범과 비교했을 때 약 8%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림 5> 범죄자 처분결과-구약식 기소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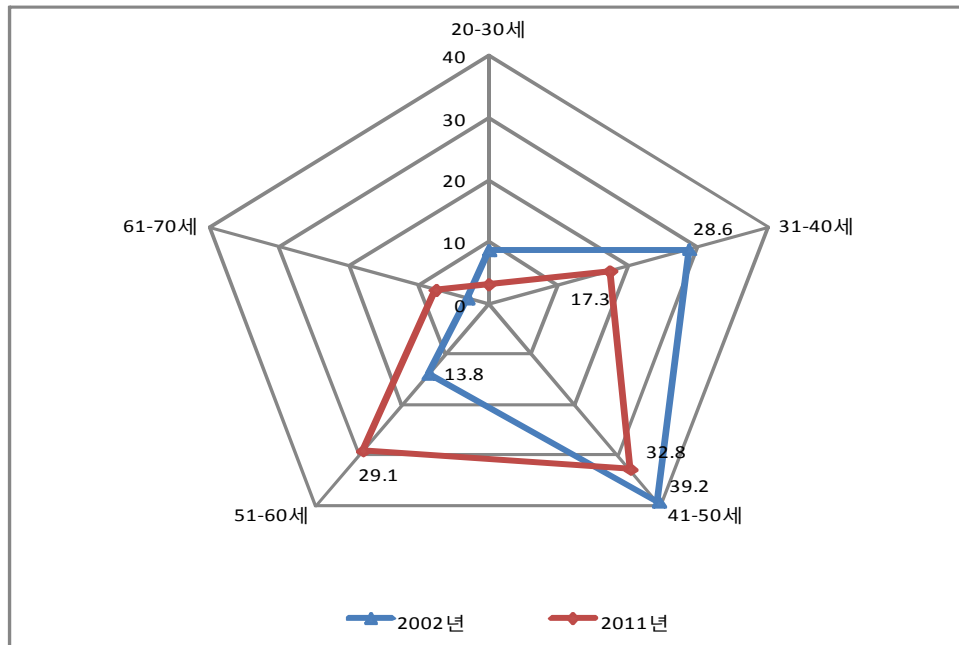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2003-2012), 단위: %

이러한 검찰의 기소단계에서 범죄자 처분은 결과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정해진 형을 선고받는 재판인원수를 크게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제1심에 접수된 식품위생법 위반 형사공판사건은 대부분 재산형이 선고되고(최근 10년간 61.4~75.6%), 유·무기 자유형은 2002년 2.1%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1년에는 전체 접수건수 1,338건 중 단 5건에 지나지 않았다.

#### 4.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의 특징

### 가. 30~50대 여성범죄자가 다수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범죄자의 성별이다. 이는 식품위생법에 종사하는 사람의 인구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의 50% 이상(2010년에는 70.0%에 달함)이 여성범죄자라는 점은 특별법범의 여성범죄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6.0%에 그치고 있는 실정에서 형사정책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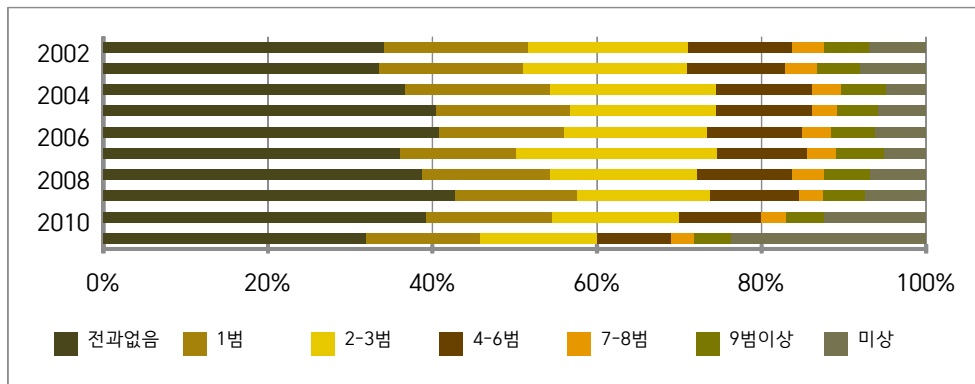
<그림 6>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자의 범행당시 연령분포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2003, 2012), 단위: %

두번째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이 최근 10년간 점차 연령폭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50대가 크게 증가하고, 60대 이상 고령층의 범죄율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 나. 동종재벌을 및 재벌기간

재벌을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범죄자의 전과유무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특별법범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은 전체 대비 전과가 없는 초범이 다소 (4-5%) 많은 편이나, 1범~6범 사이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층도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특별법범보다는 다소 두터운 편이다.



<그림 7>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의 범죄자 전과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2003-2012), 단위: %

또한 재벌자의 재벌기간도 전체범죄의 1년 이내 동종재벌율은 13.7%(2011년)에 비해 같은 기간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의 동종재벌율은 22.4%로 타범죄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띠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일부 식품위생범죄를 생계형 범죄로서 형을 감형해주는 법원의 판단과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식품범죄는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고, 사회적 법익을 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피해자에 대한 처리보다는 위험을 예방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본다면 식품위해범죄를 예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재의 정책에서 보다 적극적인 일반예방적 측면의 정책강화를 통하여 재벌을 방지하는데에도 주

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제3절 불량식품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지난 2011년 3월 2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식품·보건범죄에 대한 세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동 위원회는 식품·보건범죄의 여러 가지 유형 가운데 허위표시,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 부정의료행위 등 총 3가지의 형태에 대한 양형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식품범죄라고 평가할 수 있는 허위표시와 유해식품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허위표시범죄에 대한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중소규모 유형 (5,000만원 미만)	~8월	4월~1년	10년~1년6월
2	일반유형	4월~1년	10월~2년	1년6월~3년6월
3	대규모 유형 (5억원 초과)	8월~2년	1년6월~3년	2년~4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li> <li>·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li> <li>·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li> <li>· 의약품·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li> </ul>

		· 원산지 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 범행동기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행위자/기타	· 적발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가. 감경요소

### 1)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피고인이 피용자 또는 부하직원의 지위에서 회사나 영업주의 이익을 위해 수동적으로 범행에 참여하거나 범행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적용례>

· 사실관계

(1) 갑과 을은 공모하여 강원 홍천, 춘천산 원료곡을 확보하지 못하자, 타지역산 쌀로 만들어지는 제품(A, B)에 비하여 강원 홍천, 춘천쌀로 만들어지는 제품(C, E, E)이 평균 판매가격이 더 높은 점을 이용하여 타지역쌀로 C, E, F를 만들어 판매하기로 결의하고 2010년 9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전문 S

영농조합법인 외 10개소에서 전북 등 타지역산 벼와 충남 M군 정미소 외 8개소에서 9천 8백여톤(126억4천여만원 상당)을 구입함

(2) 이를 2010년 9월경부터 2011년 11월 경까지 T주식회사 등에 판매하면서 ‘원산지: 춘천시’, ‘원산지: 강원 홍천’로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면서 양곡의 생산자, 가공자, 도정일자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혐의로 기소됨

· 제1심 판결: 갑- 징역 1년(집유 2년, 160시간 사회봉사), 을- 징역 6월(집유 2년, 80시간 사회봉사), 병(농업법인 A주식회사)- 벌금 3천만원

· 을의 집행유예 이유: 피고인 을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갑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행한 종업원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sup>54)</sup>

## 2)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100% 외국산 쌀을 국내산 쌀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외국산과 국산 쌀을 혼합하여 국산쌀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실제로는 수입 고춧가루 50%와 국산 고춧가루 50%로 혼합한 고춧가루를 ‘수입고춧가루 30%, 국산 고춧가루 70%’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를 의미한다.

<적용례> : 2011년 횡성한우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유통된 가짜 한우도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하기는 하였으나 불량식품이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내산 한우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여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sup>55)</sup>

54) 춘천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고단191 판결[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55) [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 2. 22. 선고 2009고단1011 판결; [항소심] 춘천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노227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3575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사건].

### 3)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제조된 식품 등의 대부분이 제3자에게 점유·소유가 넘겨지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적용례>

##### · 사실관계

갑은 부산시에서 A물류를 운영하며 식품제조가공업에 종사하면서 2011년 7월 경 냉동창고에서 실제 제조일자가 2007년 11월 경인 피뿔고동의 제조일자를 2011년 5월 18일로,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각각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피뿔고동 140킬로그램을 음식점 등에 판매하고, 남은 피뿔고동 **168킬로그램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됨

##### · 제1심 판결: 징역 8월(집유 2년, 120시간 사회봉사)

· 양형이유(감경사유): 10년간 수산물가공업체를 운영하는 동안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판매한 소라 대부분을 회수하여 폐기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sup>56)</sup>

### 4) 내부비리 고발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 5)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식품·보건범죄로 인한 전과와, ㉠ 지속적으로 무분별하게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의 산물이 부족한 경우에만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의 산물을 허위로 원산지 표시하

56) 부산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2고단382 판결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여 판매한 경우<sup>57)</sup>, ㉠ 거래처에서 납품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하는 바람에 그 단가에 맞추기 위하여 허위표시 범죄를 범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적용례>

· 사실관계

[1] 갑은 경기 시흥시에서 바지락 도·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을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A주식회사 전무이사로 위 회사의 바지락 매입·수출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병 주식회사는 바지락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2] 피고인 갑과 을(병 주식회사)은 국내에서 출시되는 바지락만으로는 A주식회사에서 일본으로 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되는 바지락의 물량을 조달하기 어렵고, 가격 등 단가를 맞추기 어렵게 되자, 2010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중국산 바지락 수입업체로부터 바지락을 매입하여 마치 국내산 바지락인 것처럼 재포장 작업을 하고 92회에 걸쳐 바지락 합계 34만 킬로그램(8억여원 상당)을 A주식회사에 납품함

[3] 피고인 을(병 주식회사)은 2010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위 A주식회사에서 갑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배송받은 중국산 바지락에 국내산 바지락을 일부 혼합하여 바지락 전량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서 부산상공회의소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받은 후, 110회에 걸쳐 39만 킬로그램을 전량 국내산인 것처럼 일본에 수출함(2만 킬로그램은 전량 국내산인 것처럼 표기하여 수산물 도·소매 업체에 판매함)

· 제1심판결(확정): 갑- 징역 1년 및 벌금 1천만원, 을- 징역 1년6월 및 벌금 1천만원, 정- 벌금 5천만원(법인)

· 양형이유(유리한 사유): [1] 갑과 을은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2] 반성하고 있는 점(을의 경우 여러 봉사활동을 해온 점), [3] 거래선을 잃지 않기 위해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sup>58)</sup>

## 나. 가중요소

57) 춘천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고단191 판결.

58) 부산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3고단1838 판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대외무역법 위반 사건].

## 1)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1)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상품인 경우, 2) 백화점이나 전문 대리점 등 상대적으로 높은 공신력이 부여되는 장소에서 판매되는 상품인 경우, 3)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규모 기업이 허위표시 등을 한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적용례>

· 사실관계

갑은 축산물가공업체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동양념소갈비를 제조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2002년 1월경부터 2004년 12월경까지 살이 붙어 있는 갈비를 얇게 포를 떼서 갈비를 만들지 않고 갈비살이 없는 갈비뼈에 어묵의 탄력결착강화 용도로 사용되는 ‘푸드바인드’(식품결착제)라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 갈비처럼 얇게 포를 뜬 부채살(소 앞다리 부위)을 인위적으로 접착하여 갈비를 제조하여, 이를 ‘갈비뼈’, ‘부채살’, ‘푸드바인드’라는 전혀 이질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갈비 모양만을 갖춘 가짜 소갈비를 이동소갈비라고 명명하여 마치 진짜 소갈비인 것처럼 전국에 유통(홈쇼핑, 백화점, 대형할인점, 전국 소재 350여개 식당 등에 159억원 상당)한 혐의로 기소됨.

· 제1심판결: 징역 8월, 항소심 판결: 벌금 1천만원(확정)<sup>59)</sup>

이 사안의 경우 ‘이동양념소갈비’라는 널리 알려진 유명상품으로 159억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백화점 등에 납품하여 가중요소를 적용하였으나, 실제로는 감경구간인 8월~2년의 최저형량인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이보다 감형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였다.

## 2)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허위표시가 제거된 상태에서의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차이

59)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2. 16. 선고 2004고단8411 판결;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1. 선고 2005노611 판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가 큰 경우를 의미한다.

<적용례>

· 사실관계

[1] 갑은 2009년 1월 19일경부터 2009년 7월 28일 경까지 인천에서 갑이 운영하는 A식품에서 압착기 9대, 혼합탱크 9대, 저장탱크 10대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참기름을 짜낸 뒤 생기는 깻묵과 대두유(콩기름)를 3:7의 비율로 혼합하여 압착기에 넣고 압착하는 방법으로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여 이와 같이 제조한 가짜 참기름을 B유통 등에 총 25회에 걸쳐 총 1만3천리터 상당(7천2백만원 상당)을 판매함. 또한 2009년 1월 19일경부터 같은해 8월 21일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중국산 들기름과 대두유(콩기름)를 6:4의 비율로 혼합하여 압착기에 넣고 압착하는 방법으로 가짜 들기름을 제조하여 제조한 가짜 들기름을 B유통 등에 총 13회에 걸쳐 총 6천6백리터 상당(공급가액 합계 4천1백만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2009년 1월 6일경부터 같은 해 8월 10일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옥배유 25%, 대두유 24%, 시즈닝오일 1%, 채종유 30%, 면실유 20%를 혼합하여 '향미유'(일명 맛기름)를 제조하면서 원료명 표시에는 '면실유 20%'가 아닌 '해바라기씨유 20%'로 표시하여 'C'등에 총 49회에 걸쳐 총 2만6천리터(합계 9천9백만원 상당)을 판매함.

[2] 을은 2009년 2월 11일 경부터 같은해 7월 28일경까지 구리시 소재 을이 운영하는 D푸드에서, 갑이 납품하는 참기름과 들기름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짜 참기름 총 2천5백리터 상당(공급가액 1270만원 상당), 가짜 들기름 총 1500리터(공급가액 1500만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식자재 도소매 업체에 판매함

[3] 병은 2009년 2월 2일경부터 5월 16일경까지 인천소재 병이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E에서 갑이 납품하는 참기름과 들기름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짜 참기름 총 6000리터 상당(공급가액 3400만원 상당), 가짜 들기름 총 1900리터 상당(공급가액 1100만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식자재 도소매 업체에 판매함

[4] 정은 2009년 5월 22일경부터 8월 21일 경까지 광명시 소재 정이 운영하는 F식품에서 갑이 납품하는 들기름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짜 들기름 총 1600리터 상당(공급가액 합계 830만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식자재 도소매업체에 판매함

[5] 무는 2009년 1월 19일경부터 7월 27일경까지 서울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식품에서 갑이 납품하는 참기름의 가격이 시중보다 현저히 낮아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짜 참기름 총 2000리터 상당(1212만원 상당)을 납품받

아 이를 식자재 도소매 업체에 판매함

· 판결(제1심-확정): 갑-징역 1년 6월, 벌금 1억원, 을-벌금 7백만원, 병·정·무- 각 벌금 5백만원

· 양형이유(불리한 사유): [1] 갑은 2009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리놀렌산이 함유된 참기름을 판매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2] 그 중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식품제조등) 범행은 위 피고인이 깻묵(기름을 짜고 남은 깨의 찌꺼기로서 흔히 낚시의 밑밥, 논밭의 밑거름, 가축의 사료 등으로 사용된다)과 대두유를 혼합하여 가짜 참기름을 제조한 다음 이를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3] 위 피고인이 제조하여 판매한 가짜 참기름, 들기름, 향미유의 양이 비교적 많음, [4] 이와 같은 부정식품 관련 범죄는 소비자인 국민을 속이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면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큼.

· 양형이유(유리한 사유): 위 기름이 가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는 않음<sup>60)</sup>

### 3)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1) 기망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2)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3) 포장시설 기타 자동화 설비, 인쇄된 라벨이나 포장지를 사용하여 범행한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적용례>

· 사실관계

갑(63세)은 부산에서 A김치라는 상호로 김치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을, 병과 공모하여 2008년 9월 2일 경부터 2009년 5월 23일 경까지 B농산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0킬로들이 1900여 박스를 박스당 8천원 내지 9천5백원에 구입한 다음 재포장하여 박스당 1만5천원에 판매하는 등 합계 2,330박스의

60) 인천지방법원 2009. 11. 20. 선고 2009고합59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식품제조 등)(일부 인정된 죄명: 식품위생법 위반)].

중국산 배추김치에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여 판매함.

· 제1심 및 항소심 판결: 징역 8월

· 양형이유(가중): [1]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한 다음 재포장작업을 거쳐 원산지표시를 국산배추로 허위표시하여 거래처에 납품한 것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2] 먹을거리로 부정직하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범행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음

[3] 피고인이 2008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구입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중국산 배추김치가 합계 2,330박스에 이르는 등 그 범행기간 및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김치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도 상당히 중함

[4] 피고인의 처가 C식품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사실로 2008년 12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단속을 대비하여 처남명의를 빌려 D통상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김치판매업을 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김치판매업을 하였으며, 단속 후에도 다른 사업장을 임대하여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름<sup>61)</sup>

#### 4) 동종 전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식품·보건범죄(허위표시 유형 범죄 뿐만 아니라 유해식품 유형)로 인한 전과를 말한다.

<적용례>

· 사실관계

갑과 을은 축산물가공업자 및 식육가공처리업자로서 원료구입, 제품생산·판매, 공장관리 역할을 분담하여 수입산 사과, 우족, 잡뼈, 꼬리,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등에서 수입한 것을 구입하여 이를 절단하고

61) [1심] 부산지방법원 2009. 7. 21. 선고 2009고단2774 판결; [2심] 부산지방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노2668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재가공한 다음 혼합하여 제품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국산’으로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보관함.(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 제1심 판결: [1] 갑-징역 10월, 을-징역 8월(집유 2년, 200시간 사회봉사)
- 양형이유(동종전과): 2002년 12월 부산지방법원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으로 벌금 2백만원, 2004년 3월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백만원을 각 선고받음.<sup>62)</sup>

### 5)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후 단속될 때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적용례>

- 사실관계

[1] 갑은 중국 공장에서 삭스핀을 가공처리하면서 물코팅(일명 글레이징)을 한 후 급랭하여 제품 표면에 수분을 얼어붙게 하는 방법으로 중량을 부풀려 진공포장하는 방법으로, 해동할 경우 실제 중량이 700그램 내지 800그램에 불과한 중량 1킬로그램 단위의 냉동삭스핀을 저렴한 가격에 수입, 유통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1년 11월 8일경 냉동삭스핀 20킬로그램의 실제 중량이 식품의 표시 기준에 따른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한 14킬로그램 내지 16킬로그램임에도 식품유통업체인 K에 이를 130만원에 판매하는 등 2005년 1월 4일경부터 2011년 11월 8일까지 8만2천 킬로그램(68억원 상당)을 판매함

[2] 갑은 2009년 5월 28일경부터 2011년 10월 경까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냉동삭스핀을 8회에 걸쳐 58킬로그램 상당을 판매함). 또한 2003년 12월 20일 경부터 2011년 12월 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A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냉동삭스핀을 수입·판매하여 식품판매업 등을 영위함

- 제1심 판결: 갑- 징역2년(집유 3년, 2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을- 벌금 1천5백만원
- 양형이유(가중): 갑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로 식품판매업을 영위하면서

62) 창원지방법원 2007. 2. 8. 선고 2006고단1720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표시 중량을 부풀려 식품에 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도과하여 조리 또는 섭취되어서는 안 될 식품의 유통기한을 조작한 후 이를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거래업체의 담당자에게 부정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하기까지 함. 납품된 대다수의 냉동샤스핀은 국내 **최정상급 호텔 내 중식당에서 최고가로 팔리는 음식의 재료로 사용됨**. 이와 같은 범죄는 식품선택과 관련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국민이 그 모든 피해를 입게 됨. 더구나 갑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허위의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하였고, 그 판매가액도 수십 억원에 이르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 양형이유(감경): 기록에 의하면 샤스핀의 실제 중량이 표시된 것보다 작다는 사실을 상대방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실제 중량과 표시된 중량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 이를 묵인해 주는 것이 거래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일부 부족분을 보충해주기도 한 사실이 인정됨. 또 유통기한이 도과된 제품은 95킬로그램 정도이고 이 중 실제 판매된 것도 58킬로그램에 불과함. 나아가 피고인들은 보유하고 있던 냉동샤스핀 재고물량 전부를 반송 처리함. 갑에게 음주운전 1회의 전력 외에 다른 전과도 없음. 63)

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합1586 판결 [배임중재, 대외무역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 2. 유해식품범죄에 대한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식품 등의 제조 등	8월~1년6월	1년~2년6월	2년~4년
2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1년~2년	1년6월~3년	2년6월~5년
3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	1년6월~3년	2년~4년6월	4년~7년
4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	2년6월~4년	3년6월~6년	5년~8년
5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4년~7년	5년~8년	7년~10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li> <li>·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li> <li>·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li> <li>·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li> <li>· 유아·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아자</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li> </ul>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 식품 등의 제조나 유통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단순히 운반·보존·진열 행위만 한 경우</li> <li>·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li> <li>·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li> <li>· 손해가 발생한 경우(상해가 중하거나,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제외)</li> <li>· 중한 손해에 이르지 않은 손해가 발생한 경</li> </ul>

		우(안) · 의약품인 경우(1, 4, 5유형) · 식품위생법 제9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2유형)
	행위자/기타	·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피해자측의 처벌불원(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 감경요소

### 1)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 2) 적발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행정처분이 있기 전 자진해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정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적발후 다시 그 행위를 반복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 <적용례>

##### · 사실관계

[1] 갑 및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을 주식회사는 농축산물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미트비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써 2009년 1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주)B육가공 등의 업체로부터 미국산·뉴질랜드산·호주산 쇠고기 9,861.5kg을 공급받아 단순절단·포장 등의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C회사에 납품하여 1억1천7백여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 또한 미국산·멕시코산·뉴질랜드산 쇠고기 1만5천 킬로그램을 공급받아 같은 과정에서 ‘호주산’으로 표기한 후 C회사에 납품하여 약 1억4천여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 미국산·칠레산 등의 돼지고기 1만2천7백 킬로그램을 공급받아 같은 과정에서 이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후 C회사에 납품하여 1억여원 상당의 매출

을 올렸고, 브라질산 닭고기 8천6백 킬로그램을 공급받아 ‘국내산’으로 표기한 후 C회사에 납품하여 4천6백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

[2] 갑은 이밖에도 2009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134개 공급업체로부터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총 12만4천 킬로그램을 공급받아 이를 ‘국내산’ 또는 ‘호주산’으로 거짓표기하고 D호텔 등 25개 업체에 납품하여 총 11억 9천여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기소됨.

· 제1심 판결(확정): 갑- 징역 1년6월(집유 2년), 을- 벌금 2천만원

· 집행유예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꿈나무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이후 **A미트비프 주식회사**를 폐업한 점 등<sup>64)</sup>

## 나. 가중요소

### 1)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법령에 의해 관할관청에 제출하거나 기록·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위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적용례>

· 사실관계

[1] [식품위생법 위반 부분] 갑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7월 27일부터 같은 해 9월 24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2012년 8월 29일 새벽 0시 20분 경 청소년인 C(17세) 등에게 맥주 등을 판매하였고, 같은 달 31일 밤 11시 30분 경 청소년인 D(17세) 등에게 소주와 맥주, 안주 등을 판매하였으며, 같은 해 9월 17일 밤 10시 30분경 E(23세) 등 5명에게 소주와 맥주 안주 등을 판매함

[2]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10월 5일 영업장폐쇄 처분을 받음. 그러나 갑은 2012년 10월 7일부터 22일까

6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0고단3085 판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지 총 4차례에 걸쳐 다수 청소년들에게 소주, 맥주, 안주 등을 판매함

- 제1심 판결: 징역 3년

- 불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나 영업폐쇄처분이 있었음에도 다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 판매횟수와 청소년의 수가 많은 점, 수명의 단속경찰에 대하여 무고한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증을 교사한 점** 등<sup>65)</sup>

## 2) 유아·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분유, 이유식, 어린이용 비타민, 어린이용 보습제 등 유아 또는 어린이의 건강과 성장에 관련된 식품을 의미한다.

<적용례>

- 사실관계

[1] 갑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A식품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7년 1월경 B농산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K로부터 동물사료용으로 수입되어 식약청장에게 식품 등으로 수입신고되지 않고,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빨간색소인 Carmoisine이 약 5% 가량 묻어 있는 사료용 겔보리 5만 킬로그램을 1킬로그램당 33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사료용 겔보리 27만5천 킬로그램(금액 9,075만원)을 구입하여 보리차나 엿기름 등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장함. 또한 2006년 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K로부터 사료용 옥수수 중 바닷물, 빗물 등의 혼입으로 썩거나 곰팡이가 있어 손상품 처리된 비료용 옥수수 45만 킬로그램(8,500만원 가량)을 구입하여 옥수수차를 가공·제조하여 판매함(원료 1킬로그램당 190원, 옥수수차 380원)

[2] 을은 2007년 2월 B농산에서 K로부터 사료용 옥수수 중 바닷물, 빗물 등의 혼입으로 썩거나 곰팡이가 있어 손상품 처리된 비료용 옥수수 2만4천 킬로그램을 구입하여 옥수수차를 가공·제조하여 판매함

- 판결선고: 갑- 징역 1년(집유 1년), 을-징역 6월(집유 1년)

- 양형이유: [1]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 다수의 건강

65) 부산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고단9777 판결 [무고, 식품위생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위증교사].

을 해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책임을 타에 전가하는 등 죄질 및 범행 후 정황 등이 매우 좋지 않음. [2]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어 엄벌함이 마땅함. [3] 갑이 구입한 겔보리는 유통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및 공범들과의 양형균형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sup>66)</sup>

\* 이 사안에서 색소의 위험성으로 '어린이 과잉행동장애 위험성 증가'를 예로 들었고, 이 내용이 판결문에 반영됨.

### 3)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후 단속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아래의 적용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년여간 범행한 내용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양형사유로 참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적용례>

##### · 사실관계

[1] 피고인 갑은 인천소재 H폐기물 담당자, 을은 위 교역처 운전기사인데, 갑은 1) 2004년 9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위 교역처에서 발생하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폐기물인 밀가루, 햄, 과자, 치즈, 음료 등의 물량이 약 575,000킬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 2004년 9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위 교역처에서 발생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폐기물인 밀가루, 햄, 과자, 치즈, 음료 등 약 15만 킬로그램 상당을 시·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은 L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년 9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위 교역처에서 발생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폐기물인 밀가루, 햄, 과자, 치즈, 음료 등 약 35만 킬로그램 상당을 위 L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함. 3) 또한 J와 공모하여 세관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6년 3월 8일 김포시 K 김포창고에서 관세의 면제를 받은 식품인 위 교역처의 캔맥주 2천4백 박스(물품원가 1840만원 상당, 국내 도매가격 6천만원 상당)을 L에게 판매함으로써 판매목적으로 식품을 밀수입함

66)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8. 선고 2007고단7108 판결;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8. 선고 2008노1297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2338 판결 [식품위생법 위반, 사료관리법 위반]

[2] 갑과 을은 위 교역처 보안담당관 M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6년 3월 14일 동두천시 N에 있는 O에서 관세의 면제를 받은 식품인 위 교역처의 캔맥주 3천2백 박스(물품원가 2천5백만원 상당, 국내도매가격 8천2백만원 상당)를 P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월 13일까지 맥주 총 22,720박스(물품원가 합계 1억9천만원 상당, 국내도매가격 합계 6억 2천만원 상당)을 위 P 및 Q에게 판매함으로써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각 밀수입함

· 판결선고(1심, 항소심, 상고심): 갑- 징역 2년, 을- 징역 1년6월(집유 3년), 갑으로부터 678,892,850원 추징, 을로부터 618,163,150원 추징

· 양형이유

[1] 갑: 갑의 이 사건 범행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갑은 H와 같이 **국내의 행정적 규제가 잘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에서 폐기물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장기간에 걸쳐 법정 자격을 갖추지 못한 폐기물 처리업자를 통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폐기물을 배출하여** 왔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와 같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불법적인 댓가를 지급하고 폐기물 배출을 가장하여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물로 분류된 맥주 등 식품을 국내에 밀수입하여 사리를 도모하기에 이르렀는데, 갑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환경과 건강, 국가의 경제질서 등 위 각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중함. 갑은 위 교역처의 보안담당관인 M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갔고 자신은 그로 인한 이익이 별로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갑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서 갑이 위 교역처의 폐기물 담당자로서 행한 역할, 이 사건 각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의 우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임.

[2] 을: 을의 경우 판시 관세법위반죄 및 식품위생법 위반죄의 범행에서 물품의 운송, 판매처의 물색 등 적지 않은 역할을 하기는 하였으나, **갑의 하급자로서 갑의 제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받은 이익도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체포 후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sup>67)</sup>

67)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7. 선고 2007고단1648 판결;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9. 선고 2007노1702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세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 제4절 식품범죄의 법적용상 문제점

### 1. 복잡한 식품범죄체계의 문제점

#### 가. 법집행의 어려움 - 복잡한 식품범죄의 출처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써 불량식품범죄의 개념설정을 위한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현행 실정법상의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본다. 즉 실정법상 일정한 유형의 식품관련 위반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처벌규정을 중심으로 불량식품범죄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개념설정을 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이유는 현행법령상 불량식품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규정들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식품범죄의 출처 법령을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총 6개의 법률 뿐이다.

그러나 그 밖에도 식품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로써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국민건강증진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축산법, 사료관리법, 비료관리법, 농약관리법, 인삼산업법,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급식법, 학교보

건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소금산업진흥법, 주세법, 식품안전기본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법 등도 들 수 있다.

또한 아래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 법률의 소관부처도 분산되어 있고, 각각 특별사법경찰을 두고, 일반 경찰 및 해양경찰도 함께 단속을 하고 있으므로 범죄수사를 하는 주체도 매우 다양하다.

법률명	소관부처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기본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무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법	
사료관리법	
비료관리법	
농약관리법	
인삼산업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해양수산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학교급식법	교육부
학교보건법	
수도법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주세법	기획재정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법	
산업표준화법	

&lt;표 7&gt; 식품관련 법률 및 소관부처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산재와 형사처벌 조항의 복잡화는 식품위생에 대한 대표적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조차도 체계적인 이해를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범죄수사를 하고 있는 일선 경찰관들에게는 단속의 대상을 분간하는 것조차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 나. 실정법 체계내에서의 모순점

이는 비단 실무적인 법집행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 체계 내에서도 여러가지 모순점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그 위해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식품등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제3항). 이 경우 영업자는 해당 식품등에 대하여는 제조·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제4항),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7조 제1호).

그러나 식품안전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관계행정기

관의 장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그 위해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식품등의 생산·판매 등을 금지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사업자는 생산·판매 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생산·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지만,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를 대비한 형사처벌 내지 행정처분에 대한 조치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다. 양형기준 세부유형의 흠결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허위표시범죄와 유해식품범죄의 세부유형은 식품위생법 제93조 제3항, 제94조 제3호, 제95조 제2호 내지 제5호, 제96조 제2호 내지 제9호, 제98조 등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 2. 불량식품범죄 개념구성의 문제점

### 가. 개념의 검토

####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개념구분에 대한 문제점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모든 식품’ 또는 ‘소비자를 속이는 모든 식품’을 불량식품이라고 명명하면서 5가지의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제1유형 내지 제3유형은 현행법령에 의해서도 범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4유형(저가·저품질

제품으로 어린이를 현혹하는 소비자 심리 악용행위[담배, 화투모양 과자 등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이나 미끼 상품 판매])과 제5유형(비위생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거나 재사용하는 비양심적 행위[세균수 초과 냉면, 식중독균 검출 김밥 등 판매, 사용반찬 재활용])은 지나친 국가의 개입이라고 보일 수도 있다. 특히 제5유형의 사용반찬 재활용이라는 비양심적인 행위는 업계의 자율정화 내지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도의적 영역에 남겨두고 형사법적인 제재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의 개념규정상 문제점

다음으로 최근 발의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량식품의 개념 규정을 두고자 한 기본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지나치게 모호하여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값싼 원재료’, ‘품질을 저하시키는 물질’, ‘성분의 일부’, ‘질이 낮은 다른 성분’, ‘중요한 성분 및 영양소’, ‘반드시 필요한 특정성분’, ‘쉽게 부패되는 물질’, ‘상한 상태’, ‘인체에 유독·유해한 물질’, ‘썩었거나 상하고’, ‘불결한 동물·식물 원료’, ‘그 밖에 기준 및 규격이 부적합한 식품’ 등은 명확성의 원칙 또는 성문법주의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본다.

## 3) 현행법률상 개념의 죄형법정주의 부합여부

끝으로 식품위생법상의 위해식품이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부정식품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허위표시범죄와 유해식품범죄 등은 현행 법률상의 형사처벌조항을 그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죄형법정주의에는 부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나. 새로운 개념의 정립 필요성

불량식품범죄라는 범주에 포섭되지 아니한 여러 가지 범죄의 유형이 다른 식품관련 법률에 산재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식품위생법에서 ‘불량식품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세부적인 각호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 이외의 다른 식품 관련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을 편입시킬 필요성도 있는데,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집중된 것을 감안할 때 여러 식품관련법률을 통합한 ‘특정식품 등에 대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거나, 식품관련 기본범죄 유형을 형법전에 편입시키는 방안<sup>68)</sup>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식품범죄에서의 불량식품 개념은 부정식품인지 불량식품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불량식품의 개념을 두어 식품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시도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제3장 부정·불량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대책

68) 같은 취지: 이재상,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3, 638쪽.

## 제1절 형사제재의 준비를 통한 대처방안

### 1. 동종 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안

#### 가. 최저형량제의 도입에 따른 재범방지 효과

현행 식품위생법의 처벌조항은 제93조를 제외하고 대부분 형량상한제(‘~년 이하의 징역’)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벌금이나 행정처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비슷한 형량상한제를 실시하는 범죄에 비해 범죄의 예방적 효과가 쉽게 달성되지 못하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러다보니 동종재범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서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먹거리 안전확보,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의 요청에 따라 ‘최저형량제’ 또는 ‘형량하한제’(‘~년 이상의 징역’)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현재 우리 법에서 실시하고 있는 형량하한제는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먼저 처벌조항을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범죄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년 이상 유기징역 상한 30년 이하로 두는 방법이 있다. 또 하나는 처벌조항을 ‘~년 이상 ~년 이하’로 상한과 하한을 모두 정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 제233조의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예로 들 수 있다. 동조 제1항에서 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에 대하여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2013년 7월 30일자로 공포된 식품위생법[법률 제11986호, 시행일

2014. 1. 31.] 제94조에서 5년 이내에 재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한다는 내용으로 최저형량제를 일부 도입하였고, 특히 질병에 걸린 동물이나 마황, 부자 등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넣어 제조·가공·수입·조리한 사람이 5년 이내에 재범하는 때에는 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이나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실형선고가 낮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현행 법정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형벌에 대하여 위와 같이 법정형을 상향시킨 이유는 감경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형선고를 통하여 엄벌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법규 자체를 개선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개선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상해 이하의 결과(예를 들면 부작용)가 발생하였을 때에 대해서 제조·판매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게 할만한 법적인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하면서 마황 등 식품첨가가 금지된 품목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그 성분을 사용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식품위생법 제93조 제2항), 이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인체에 현저히 유해하거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식품의 경우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지 여부는 장기간 복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고, 제조·판매로 적발되었을 당시에는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인체의 유

해성 문제는 해당 식품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자 할 때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아래의 사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환각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심지어 식품공전상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에서도 위반시 비교적 법정형이 높은 마황을 첨가한 다이어트 식품 제조업자의 처벌에 대해 인체에 대한 부작용이나 유해성이 실제로 파악되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가중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요인 중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

· 사건의 경과

갑과 을은 2004년 3월경 ‘마황(식약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상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되어 있음)’을 첨가한 식품을 제조하여 A, B, C라는 제품명으로 다이어트 식품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갑은 호박, 창출, 울무, 솔잎, 삼백초, 함초, 황금, 옥수수수염, 감초 등에 ‘마황’ 2.5킬로그램을 첨가하여 물과 함께 추출한 후 100밀리리터 단위로 9천봉씩 포장하여 제조하고, 을은 이를 인터넷쇼핑몰에 광고하고 주문을 받아 함께 판매함(9억3천여 만원 상당). 또한 위 제품에 업소명 및 소재지, 원재료명, 성분명 등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마황을 표시하지 않는 등 허위표시하여 이를 판매함

병은 2007년 11월경 D식품가공업체에서 C를 제조하면서 마황과 함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한 목통을 원료에 추가하여 제조하였고, 제조업소 소재지의 표시를 누락한 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에 사용함(품질검사도 전혀 실시하지 않았으며,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 원료의 입출고, 사용에 관한 원료수불관계서류 및 제품거래기록을 전혀 작성·보관하지 않음)

· 제1심 판결

갑: 징역 2년 6월, 벌금 9천3백만원(집유 3년), 을: 징역 1년 6월(집유 3년), 벌금 9천3백만원, 병: 징역 1년(집유 2년) (노역장유치 환산: 1일 1천만원)(확정)<sup>69)</sup>

69) 부산지방법원 2011. 5. 6. 선고 2010고합878 판결 [보선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식품제조 등), 식품위생법 위반].

최저형량제와 관련된 식품위생법 개정 내용은 2013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대법원의 양형기준에는 동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이에 합당한 양형기준의 개정이 요구된다.

## 나. 동종재범에 대한 실형선고 및 식품사업 불허 등 처벌강화

위의 최저형량제의 도입으로 재범에 대한 실형선고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법정형으로 인한 재범방지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현재의 식품범죄에 대한 처벌은 벌금이나 행정벌로서의 과징금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국민이 느끼기에 체감처벌 정도가 약하다고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동종범죄(식품관련 범죄로 식품위생법 위반 등 하나의 법률 또는 한 종류의 범죄에 국한하지 않는다)를 2범 이상 재범할 경우에는 벌금형을 배제하고, 행정기관에서도 실형을 고려한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을 원칙으로 하며, 동 범죄로 인하여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향후 식품관련 사업을 불허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식품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법제도적인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현재 마련되어 있는 제도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식품범죄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지역별로 간헐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수법은 진화하기보다는 과거의 것을 모방하거나 답습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최근 크게 이슈가 되었던 수산화나트륨(일명 양잿물)을 녹인물에 삭스핀, 견해삼, 오징어포, 논우렁이 등을 담귀 두었다가 부피를 부풀려 판매한 행위나, 먹지 못하는 들깨묵을 구입하여 공업용 용매제인 헥산을 넣어 기름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들은 2013년<sup>70)</sup>에도 발생하였

지만, 2009년<sup>71)</sup>, 2012년<sup>72)</sup>에도 이미 크게 사건화되어 관련자들이 사법 처리된 바 있다. 게다가 심지어 형사사건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동일 사업장에서 단속을 대비하여 가족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식품회사를 운영하는 등으로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예<sup>73)</sup>도 있어서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 2. 범죄수익의 몰수와 부당이득환수제도 확대

현행 식품위생법 제93조 제3항에 의하면 제93조 제1항 및 제93조 제2항의 경우 제조·가공·수입·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제조, 가공, 위조, 변조, 취득,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고 있다(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경우에 제4조 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또는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데(식품위생

70) '가짜 참기름 제조도 천인공노할 범죄에 추가해야' 2013. 6. 10.자

71) 부산지방법원 2009. 6. 5. 선고 2009고합242 판결 등.

72) '불경기 서민주머니 농락한 가짜 참기름 판매 일당 검거' 2012. 9. 24.자 신문.

73) 부산지방법원 2009. 7. 21. 선고 2009고단2774 판결 참조.

법 제83조 제1항),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해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이에 따라 판매량은 위해식품 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자연적 소모량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2013년 7월 30일 공포, 2014년 1월 31일 시행] 제94조 제3항에 따르면 제94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해당 식품 또는 첨가물을 판매한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더불어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는 ‘부당이득환수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현재의 우리 법제도는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012년을 기준으로 부당이득 환수실적이 총 12건, 5억 6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을 개선하여 영업규모에 따른 환수액 차등적용 및 제조된 불량식품의 전량 회수 의무화 등 주무부처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하고 공평한 법집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3. 유아·아동대상 식품범죄에 대한 대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과자류, 캔디류, 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아이스크림류, 어육소시지, 유탕면류, 국수,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의 가공식품과 일부 조리식품(동법 시

행령 제2조 별표)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동법 제2조)하고, 어린이의 기호식품 중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 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제조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

다만 이 경우 위 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에서는 유아나 아동대상 식품범죄에 대해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특히 식품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햄과 소시지의 발색제·방부제로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sup>74)</sup>은 대량 섭취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 속 헤모글로빈의 철이 산화되어 산소와의 결합이 어려워지면서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을 일으키는데, 특히 유아는 메트헤모글로빈을 환원하는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른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한다<sup>75)</sup>. 적어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식품위생범죄가 발생할 때에는 무관용 원칙<sup>76)</sup>에 입각하여 임의적 형량 감경을 배제하고<sup>77)</sup>, 형사처벌이 확정된 사업자의 명단을 일정기간 공표하는 등 성장기 어린이를 불량식품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처벌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 비형벌적 제재의 적극 활용

74) ‘발색제’는 햄, 소시지 등 육류가공시 검붉은색으로 변해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고유의 색을 유지, 개선시켜 주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로, 통조림에서 자라는 보툴리누스균 생육억제효과도 있어 식중독 예방에 효과적이는데, 그 종류로는 아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질산칼륨이 있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 왜 필요한가요?’, 2012.4

75) ‘밥상속 불청객’ 식품첨가물 2006. 11. 16. 주간한국.

76) 참고로 미국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제346a조(Tolerances and exemptions for pesticide chemical residues) C항(Exposure of infants and children)에 따르면 아동이 주로 소비하거나 그 식품을 소비하는 다수가 아동인 지역에서 판매되는 식품에서 살충제 잔여물이 검출될 때에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7) 현재의 양형기준에는 유아·아동대상 식품인 경우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구분되어 있다.

현행 형법상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집행유예와 동시에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식품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건의 경우 수강명령은 거의 적용된 적이 없고, 사회봉사명령 또한 최근 들어 특히 원산지표시위반 또는 허위과대·광고행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되고 있다<sup>78)</sup>.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시, 장소에서 공익을 위하여 무보수 근로에 종사하는 제도로서, 범죄자의 처벌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범죄에 대한 속죄의식을 유도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식품범죄는 다른 강력범죄와는 달리 국민의 먹거리에 집중되어 있는 범죄이고, 급격하게 확산될 수 있으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험성만을 구성요건으로 하여 처벌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접피해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회에 위험성을 초래하는 사회적 법익 침해범죄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이 어려운 대신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사회에 끼친 해악을 직·간접적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수강명령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식품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에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식품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계도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예방노력은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업자 스스로가 할 수 밖에 없다. 수강명령은 이러한 범죄예방의 일환으로서 개인의 재범을 막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나아가 주변의 동종영업자

78) 예를 들면 춘천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고단191 판결에서는 피고인 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을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09. 6. 1. 선고 2009고단422 판결[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에서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바 있다.

의 범죄를 막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초범인 경우에는 수감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의무화하여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식품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건강회복을 위한 일명 건강기금을 설립하여, 법원의 명령을 통해 대규모 식품범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는 이 건강기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지만, 동 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블랙컨슈머가 창궐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진 학자나 실무가들도 만만치 않다<sup>79)</sup>.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무리라고 한다면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피해자를 위한 기금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대규모 식품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다수관계자의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 입증책임이나 비용문제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하여 그 중에서도 식품이라는 쉽게 없어질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것은 피해보상에 용이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본다. 건강기금을 마련해두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후유증에 대비할 수 있고, 기업의 동종재범방지 및 피해자보상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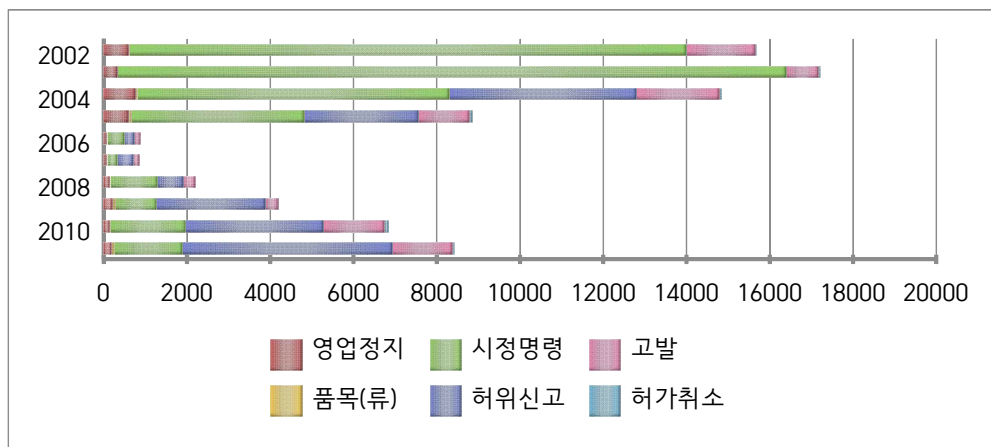
## 제2절 부정·불량식품사범에 대한 단속강화방안

### 1. 신고포상금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79) 이종영, '식품안전사고 피해자 보상과 위해사범 처벌 국제비교 및 개선방안에 토론편, '위기의 식품안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책토론회, 2012.12, 306쪽.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내용별로 최대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포상금제도는 수사기관 등에 의한 불량식품의 단속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극복함과 동시에 감시의 눈을 확대하여 사전에 범죄를 차단하는 일반예방효과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부정·불량식품 신고(1399)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2009년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하면서 허위신고도 급증하였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2011년의 경우 신고건수 대비 허위신고가 50% 이상임).



<그림 8>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1399) 조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통계(2003-2012), 단위: 건

이는 부정·불량식품 등의 제조·수입·유통·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확한 영업신고(허가)의 확인없이 행해지는 식품접객업 및 생계형 소규모 업종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2012년 12월 정부는 신고포상금을 하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유해물질 사용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의 취지를 살리고,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여 행정력 낭비 등을 예방하고자 한 것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의 경우에는 2만원(기존에는 30만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품접객업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의 경우에는 30만원으로 하였고,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의 경우에는 2만원(기존에는 10만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의 경우에는 10만원(신설),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 이외의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신고의 경우에는 1만원의 신고포상금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였다[식품위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34호,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12.12.28.].

	신고	보상금지급		미지급
		건수	금액	
2002	17,325	6,692	307,921	10,633
2003	17,081	8,210	119,993	8,871
2004	14,632	6,726	150,225	7,906
2005	8,505	3,780	146,855	4,725
2006	924	205	12,420	719
2007	885	152	10,386	733
2008	2,967	392	23,320	2,575
2009	4,538	480	45,190	4,058
2010	8,050	2,004	191,270	6,046
2011	8,411	1,614	159,408	6,797

<표 8>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포상금 지급건수 및 금액

출처: 식품의약품안전통계(2003-2012), 단위: 건, 천원

그러나 이러한 신고포상금 액수의 하향조정은 허위신고의 근절보다 신고포상제도 자체의 활용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경범죄처벌법상의 허위신고죄 또는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근절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부정·불량식품 단속의 주체로서 경찰의 역할도 점차 강화되고 있으므로, 신고포상금의 지급주체에 경찰을 포함시키는 것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단속 및 수사상 문제점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이 제4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식품 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 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것이 위해식품 등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위해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 등에 대하여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정·불량식품 여부에 대한 판단주체는 원칙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등 여러 절차를 거쳐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대적으로 식품분야에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직접 불량식품 여부를 판단하여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반면 행정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행정공무원에게 범죄수사 등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특별사

법경찰관리의 경우에도 행정 분야에서는 전문가이지만 수사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전문가로서 일반사법경찰관리와 정반대의 의미에서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사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위법행위의 인지, 입건, 수사, 검찰송치 등의 기능을 사실상 포기한 채 행정처분만 하는 경우가 많고, 단기간 교육을 받은 담당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를 맡다가 잦은 인사이동으로 효과적인 단속이 힘들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두 기관간의 다르지만 같은 문제점은 기관간의 협업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식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식약처와 경찰청이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공조체제를 확립하며, 상호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실무교육을 교차로 실시하거나 관계부처간 수사기법을 공유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제도활용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제4장 요약 및 결론

식품범죄는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같은 종류의 범죄가 되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재범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식품범죄의 발생·처리 현황과 법원 판결의 양형이유를 바탕으로 법적용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식품범죄 처리 현황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종 행정기관의 단속에 적발되는 식품위해 행위는 4만여건에 이른다. 그러나 제재는 대부분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에 그치고 형사고발은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숨방망이 처벌이라는 국민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기관이 집계한 식품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10년 평균 1만 4천여건으로, 2009년 12,212건, 2010년 10,629건, 2011년 12,211건으로 최근 다소 감소했지만 매년 1만여건을 상회한다. 그러나 이 중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사건의 비율은 평균 약 10%에 그치고, 제1심 법원 선고 가운데 약 70%가 벌금형인데 반해 징역형의 비율은 약 1% 정도이고 2011년에는 단 5건에 불과하였다.

식품범죄에 대한 기소유예율 및 약식기소율도 여타 범죄보다 높는데,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의 기소유예율은 2005년 14.2% 대비 2011년 27.6%로 약 2배 가량 증가하였다.

## 2.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의 특징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은 동종전과 2범 이상이 과반수를 차지하며 특히 1년 이내 재범률은 전체 범죄 재범률 평균인 13.7%의 약 2배 가량(22.4%)을 차지하여 재범방지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 정책이 절실하다.

또한 영세한 가족단위 영업장이 많아<sup>80)</sup> 내·외부 감시가 곤란한 식품업

80) 5인 이하 영세업체가 전체 식품기업의 70%(96.6%가 종업원 50인 이하, 상위 3.4%가 매출 74.2% 점유)이고, 기본 위생수준 미비 시설이 잔존하고 있는 것은 산업 전체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세업체가 주를 이루는 산업구조인 식품업계 스스로 안전관리 수준이 아직 부족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2013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업무계획, 2013. 3. 20.

의 특성상 단속이 어렵고, 자정노력을 주로 기대할 수 밖에 없어서 같은 종류의 범죄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거나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은 30~50대 여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연령층이 고령화되는 추세에 있다. 여타 범죄와는 달리 고령에도 재범의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형법상 피고인의 연령을 양형의 참작사유로 들고 있어서 이로 인한 형량 감경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할 것이다.

### 3. 식품범죄에 대한 법적용상 문제점

식품범죄를 규율하는 법령은 대법원이 양형기준에서 출처법령으로 제시한 6개 법률 이외에도 약 20여개 가량이 존재한다. 게다가 소관부처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환경부, 교육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거기에 각종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해양경찰청, 검찰청이 함께 관여하고 있다. 이런 사정이다보니 관계공무원의 법이해와 단속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가 대부분인 식품범죄의 특성상 단속·처벌단계에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온정적으로 고려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고령화문제와 더불어 오히려 동종 재범 억제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 4. 정책적 제언

이번 연구결과 불량식품 등 식품범죄가 지속하여 발생하는 이유에는 법제도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련되어 있는 제도

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 재범방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제언을 하였다.

첫째, 현재 식품범죄에 대한 처벌은 행정처분 또는 벌금이 대다수로 체감하는 처벌정도가 약하므로, 동종범죄 2범 이상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향후 식품관련 사업을 불허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식품범죄 법정형 자체는 선진국들보다 낮은 편이 아니나 최저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범죄의 사회적 파급력에 비해 선고형이 다소 낮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최근 식품위생법 개정(2013. 7. 30.)으로 재범에 대한 최저형량제(형량하한제)가 도입되었으며, 동 제도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전에 이에 대한 합당한 관련 양형기준의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현행 법제도상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및 부당이득환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므로, 전체적으로 부당이득환수액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업규모에 따른 구체적인 환수액 차등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제조된 불량식품의 전량 회수를 의무화하는 등 주무부처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불량식품에 노출될 경우 성인에 비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영·유아 및 아동 대상 식품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하여 임의적 형량감경을 배제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에는 동 사업자의 명단을 일정기간 공표하는 등 성장기 어린이를 불량식품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비형벌적 제재와 형사처벌의 병행으로 집행유예시 보호관찰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식품범죄 초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시에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의무화하고 대규모 식품범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는 피해자 치료 및 건강회복을 위한 건강기금 납부를 명령하는 등 비형벌적 제재가 형사처벌과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기타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강화, 관계부처간 수사기법 공유 및 식품범죄 담당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 간의 교차교육 정례화 등 불량식품 단속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I. 국내자료

- 강석구·하상도·송봉규, 위해식품의 제조·유통과정상 불법유형 및 실효적 단속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12
- 김두수, EU 식품법, 한국학술정보, 2011
- 김명철, (미국과 한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식품법, 교문사, 2007
- 김종덕, 한국의 먹을거리 위험과 대응,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20호,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1.7
- 김철규·윤병선·김홍주, 먹거리 위험사회의 구조와 동학 -식품보장과 식품 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96호, 비판사회학회, 2012.12
- 남재봉,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5권 제2호,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2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3-2012.
- 대법원, 사법연감(2003-2012), 법원행정처, 2003-2012.
- 랜달 피츠제럴드 저/신현승 역, 100년 동안의 거짓말, 시공사, 2008
- 류창호, 식품소비자의 피해구제에 관한 법제연구, 법제연구 통권 제27호, 한국법제연구원, 2004
- 리즈형, 대만의 식품안전/사기와 범죄문제, 제3회 경찰대학 국제학술세미나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한국경찰의 치안정책'-외국의 선진제도 고찰을 통한 비교연구, 2013.10.25.

- 박기석, 식품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0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0
- 박찬걸, 불량식품범죄의 피해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한국피해자학회 2013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3.4.
- 손기식, 식품범죄처벌과 관련된 일반 형법이론상의 제문제, 법조 1994년 4월호
- 식품위생법규교재 편집위원회 편저, (개정 23판) 식품위생관계법규 해설, 광문각, 2012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 11-14호, 2011-2013.
- 식품의약품안전청, 2012 수입식품등검사연보, 2013.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식품안전관리지침, 2013.8
- 신광순, 과거를 보고 미래를 연다: 우리나라 식품위생 정책의 역사, 지상사, 2011
- 야마모토 히로토 저/손성애 역, 오염된 몸 320 킬로그램의 공포, 여성신문사, 2006
- 양형위원회, 제3차 양형위원회 공청회 결과보고(식품·보건범죄), 2010.8
- 윌리엄 레이몽 저/이희정 역, 식탁의 배신(질병을 키우는 식품첨가물과 죽음의 온도 120도), 랜덤하우스, 2010
- 이만중·최은희, 식품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식품부조리 실태 및 예방방안 중점, 한국부패학회보 제13권 제1호, 한국부패학회, 2008
- 이영돈 PD의 먹거리X파일 제작팀, 이영돈 PD의 먹거리X파일(착한식당을 찾아서), 동아일보사, 2013

- 이임식, 식품안전을 위한 경찰의 역할, [2013년도 학술세미나]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경찰의 역할’, 경찰대학/국회 신의진 의원실, 2013.5.
- 이재상,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3
- 이종영, 개정 식품위생법상 식품안전성 확보제도, 중앙법학 제7집 제2호, 중앙법학회, 2005.8
- 이종영, 식품안전사고 피해자보상과 위해사범 처벌 국제비교 및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문, ‘위기의 식품안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책토론, 2012.12.
- 통계청, 2012 사회조사보고서(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2013.1
- 한국식품영양학회, (2012 개정판) 최신 식품위생관계법규, 문운당, 2012
- 허성욱, 위해식품관리에 있어서 사전예방의 원칙과 비용편익분석, 환경법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환경법학회, 2007.12

## II. 외국자료

-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Act 1991(2012.12.12)
- Food and Drugs Act 1985(Canada)
- Safe Food for Canadian Act 2012
- Food Safety Act 1990(U.K)
- 食品衛生法(昭和 22年)(일본)
-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U.S)
- Food Safety Modernization(U.S.)

### Ⅲ.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 -주요정책  
추진계획-, 2013년도 업무계획, 2013. 3. 20.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http://likms.assembly.go.kr))

영국 법령 정보([legislation.gov.uk](http://legislation.gov.uk))

일본법령제공데이터시스템([law.e-gov.go.jp](http://law.e-gov.go.jp))

캐나다 법령정보([laws-lois.justice.gc.ca](http://laws-lois.justice.gc.ca))

대법원 판결문제공신청시스템

책임연구보고서 2013-16

## 부정불량식품 범죄에 대한 정책 연구

---

2013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치안정책연구소장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로 74

홈페이지 : [www.psi.go.kr](http://www.psi.go.kr)

---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